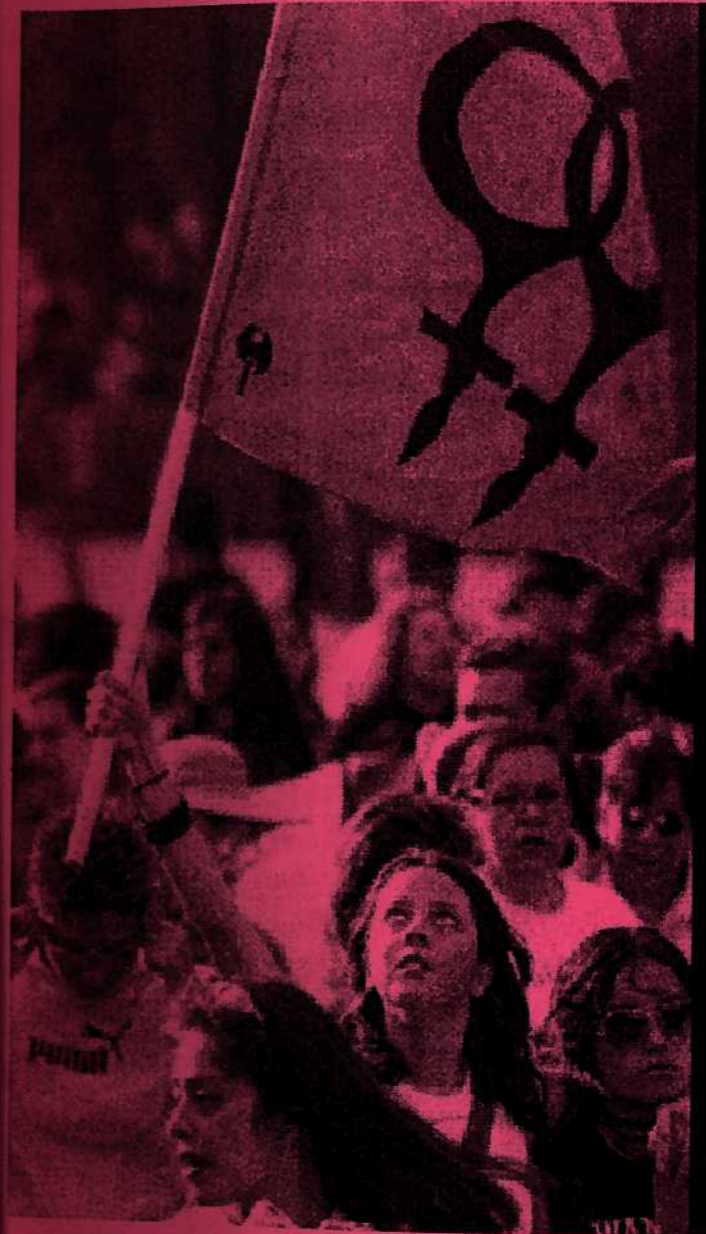


“여성의 권리를 찾아 떠나는”

제18기 앰네스티 인권학교



Contents

1 11월 2일(화)

- 여성주의로 본 인권 | 정희진

2 11월 4일(목)

- 장애여성의 인권 | 박영희

3 11월 9일(화)

- 이주여성의 인권 | 한국염

4 11월 11일(목)

-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 박김수진

5 11월 16일(화)

-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유해정

6 11월 18일(목)

- 성매매 여성의 인권 | 배금자

7 11월 23일(화)

- 일상속의 여성인권 감수성 깨우기 | 김지량

8 11월 25일(목)

- 앰네스티운동과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 김명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S.Korean Section

“여성의 권리를 찾아 떠나는”

제18기 인권학교

- ▶ 일 시 : 2004년 11월 2일 ~ 11월 25일(매주 화·목) 오후 7시-9시
- ▶ 장 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세종문화회관 뒷편)
- ▶ 참 가 비 : 일반인 40,000원, 학생 35,000원
- ▶ 대 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선착순 80명)
- ▶ 문 의 : 02-730-4755~6/mem-hre@amnesty.or.kr/www.amnesty.or.kr

날 짜	강의 내용	강 사
11월2일(화) 1강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정희진 여성학자, 서강대 강사
	여성주의로 본 인권	
11월4(목) 2강좌	세계인권선언 애니메이션 상영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장애여성의 인권	
11월9일(화) 3강좌	Imagine	한국영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주여성의 인권	
11월11일(목) 4강좌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박김수진(박통)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11월16일(화) 5강좌	앰네스티 양심수 김성만을 위한 캠페인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여성 재소자의 인권	
11월18일(화) 6강좌	성매매 여성의 인권	배금자 변호사
11월23일(목) 7강좌	Stop Violence Against Women	김지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담당
	일상속의 여성 인권감수성 깨우기	
11월25일(화) 8강좌	앰네스티운동과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	김명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담당
	졸업식 및 파티	

제18기 인권학교

강의1. 여성주의로 본 인권:

인권,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

정희진(서강대학교 강사)

1.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가해자의 '인권'

얼마 전 대학생이자 예비 군인인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나는 예기치 못한 반응에 부딪혔다. 남성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구조적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실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간과 사회를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전제와는 반대로,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을 잠재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는 상급자에 의한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피해 의식이었다. 또 하나는 자연스런 남녀 관계를 혹은 남성의 권리를, 범죄로 규정하는 현재 한국의 여성 '위주'의 법률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자한테 농담 한번 잘못했다고 (성희롱 범죄로) 3천만원"은 말이 되지 않으며, "성폭력 당했다는 여자들의 주장은 실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해 남성과 그를 지지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의해 최근 유행처럼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가해자 인권론'은 복잡한 논의를 요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여성의 진술보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성폭력은 범죄 사실이 인지, 인정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성폭력은 절도나 사기 등 다른 범죄와는 달리, 언제나 "강간이나 화간이나"라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둘러싼 객관성 논쟁에 휩싸인다. 성폭력 사건의 80%는 아는 사람에게 의한 것인데, 이는 성폭력이 남녀간의 '정상'적인 성/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성매매-아름다운 성과 사랑'은 모두 불평등한 성 역할 제도(gender system)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때문에 어린이 성폭력이나 윤간 등 남성의 기준에서 볼 때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피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은 신고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이 2% ~ 6%에 불과한 것은, 신고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성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남성 중심성은 성폭력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피해 여성은 법의 도움을 요

청하는 그 순간, 가해 남성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 한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모욕죄/간통죄 등으로 역고소한 사례는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 1988년 대구 경찰 성폭력 사건, 1993년 신정휴 교수 사건(서울대 성희롱 사건) 등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초,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2개 사건을 시작으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이 크게 증가, 일반화되고 있다¹⁾.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피해 여성이 여성단체에 상담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성폭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 여성을 괴롭히는 자신의 행위를 남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편승한 가해 남성의 2차 성폭력 행위(social rape, second rape)가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 옹호되고 있다.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성폭력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 여성을 억압하는 가해 남성의 권력이 인권은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는 이중처벌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언설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가 이중 처벌을 받기보다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가해 남성의 몇 배이며, 여성의 고통은 남성 중심적인 언어로는 아예 설명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과 '가해자 인권론'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여성주의의 문제 제기는,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서 주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성 범죄자 신상 공개는 가해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²⁾ 그러나 여성 연예인의 비디오 피해 사건이나 공중 화장실 등지에서 여성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배포하는 '몰래 카메라' 폭력에 대해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은 없다. 남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이 인권으로 주장되는 사회적 맥락을 질문하는 것이다³⁾.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개념과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법률적 차원이나 일상 생활에서나 모두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의해 구성된다.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여성의 주장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1) 전희경(2003),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을 할까", 서울여성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정책위원회 토론회 자료, 미간행

2)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성폭력 반대 운동의 맥락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여부는 여성주의자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해자 신상 공개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성 보수주의와 한국사회의 독특한 체면 문화를 활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여성주의에 대한 적대감만 높일 뿐 실질적인 근절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2002년 검찰이 성폭력 사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죄가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발상도 이러한 사고의 연속선상에 있다("성폭행범 유전자은행 논란", 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22일자).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은 성폭력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의 범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적 개인의 생물학적 결함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주의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일상적인 성별 권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신상 공개 논란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운동 세력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방지, 경찰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 은 외면한 채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것이다.

3) 프라이버시 개념은 가장 성별화 된(gendered) 언어 중 하나이다. 여성이 개인/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남성에게 가정은 프라이버시를 실현하는 공간이지만, 여성이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으려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애니타 알렌(1987) 참조.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남성의 주장은 자연스럽고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5천년이 넘는 성별 권력 관계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피해 여성의 인권과 가해 남성의 권력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남성의 특권을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삭제되는지를 보여준다. 뿐 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해 남성과 가부장제 사회가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이라기보다는 남성 생물학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성폭력의 불가피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2. 경합적 가치로서의 인권

국가기관이든 NGO든 연구자든 인권 논의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인권 개념의 보편성이 성인지적 시각에서(혹은 장애인, 동성애자,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재구성되고 있지 못한 결과로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서구/근대/남성 중심적 시각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인권 논의의 쟁점 구도 자체가 인권 문제의 해결과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권 논의의 쟁점과 관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중이나 민족, 계급이라기보다는)인권 개념에 근거한 사회운동과 그에 따른 인권 담론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현을 전후로 한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인권 운동 세력들의 오랜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과 관련한 연구, 정책, 사회운동 담론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가난을 물리치는 국가 자주력 배양 없이, 법질서 존중 없이 인권은 없다(박정희, 1962)"는 지난 시대에 비해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운동에서의 '전통적인' 피억압 세력 외에도,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심정이나 고통을 인권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학 병원의 성폭력 가해 교수를 처벌하는 행위는 그로부터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권 침해라는 주장,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준수한 대한민국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 군 가산제 폐지가 군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예비역 병장의 인권,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인의 잔혹 행위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베트남에 사과하는 행위는 참전 용사를 가해자로 간주하여 참전 용사의 인권(자부심)을 침해한다는 주장, 성을 팔 권리(생존권)로서 매춘 여성의 인권, 이성애매 여성운동이 장애 남성의 성을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장애 남성의 인권, 청소년 성 매수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쟁 등..... 각기 차원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인권 개념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인권으로 설명하는 논의가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 사례에서 인권 개념이 논의되는 공통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인권은 구성되고 쟁취되는 경합적/과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제 권력 관계와 관련 없이 추상적/초월적으로 선재(先在)하는 당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인권 담론이 정치적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각 개인간/집단간의 인권이 갈등이 일으킬 때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론'처럼 갈등하는 사회 세력간의 권력 관계에서 강자의 입장이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는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급진적인 동시에 대단히 문제적인 아이디어다⁴⁾.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칼날과 칼자루와 같은 양면성을 가진다.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현실이 아니라 지향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은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상적 가치이다. 그러나 보편성 개념은 지배 세력의 시각에서 구성된 입장이 마치 전체 인간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강자의 권력 수단이기도 하다. 즉, 누구의 입장이 보편적인 인간의 입장으로 대변되

4) 강자의 윤리로 기능한 인권 개념의 오용과 역사적 사례에 대한 분석은 커스틴 셀라스(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참조.

는가는 언제나 논쟁 거리이다. 남성(혹은 비장애인, 이성애자)의 입장이 보편으로 간주된다면, 즉 양성간 '차이'가 남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면, 여성(장애인, 동성애자)은 남성과 '같음'을 주장해도 불평등을 경험하며 '다름'을 주장해도 차별 받게 된다.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언어,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2조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소중하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⁵⁾ 행동해야 한다"(강조는 필자)는 제 1조의 내용처럼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⁶⁾ 이미 (자매애가 아니라)형제애가 인류애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 계급 제도, 서구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비장애인 중심주의,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각 개인의 삶의 조건이 다르므로, 인간의 권리는 상충되고 갈등한다. 때문에 인권은 주어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경합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권 개념은 각 정치 세력들의 충돌 속에서 맥락적인 선택과 판단을 요한다.

이는 인권을 논하는 인식자의 위치성과 상대방과의 사회적 권력 관계에 대한 질문이 거세된 '보편적' 인권 개념이,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권 담론은 다른 사회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계급, 성별, 인종, 나이, 성 정체성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 개념의 정의 자체가 그러한 사회 제도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민/인간임을 둘러싼 모든 전제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치관으로부터 영향받는다. 점에서 모든 시민권은 성적(性的) 시민권이다(서동진, 2003).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개념, 무엇이 인간의 권리인가라는 인권의 내용은 성별, 인종, 계급 제도와 연관되어 있기에 모든 인권 개념은 젠더적, 인종적, 계급적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언제나 매순간 각 정치 세력들의 투쟁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정의, 재구성되는, 피억압 세력의 개입을 기다리는 과정적 개념이다. 인간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의 문제가 인권 문제로 설정되는 것은,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에 대한 특정 방식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 개념이 정치적 경합의 소용돌이 속에 각 정치 세력의 선택을 기다리는 부유(浮游)하는 가치였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오랜 현실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인권 개념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인권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맞게 전유하고자했던 지속적으로 경합하는 가치였다. 1960년대,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이념이 이를 거부하는 불순 세력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1969년 법무부장관의 「인권연보」 발간사에서), "오늘날 세계 도처에 인권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노예화를 꿈꾸는 공산 도배들을 무찌름으로서 인권 사회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1968년 인권주간 故 박정희 前 대통령 치사 중에서) 등의 언설은, 인권이 기본적으로 '힘의 가치'이며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⁷⁾

3. 보편자 서구, 특수한 아시아?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권 이슈들은 사법 제도, 군축·평화·북한, 국가 폭력, 과거 청산, 사회권 대 자유권, 서구적 인권 개념 대 동아시아적 가치,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 소수자의 인권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연구와 현장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쟁점은 '서구적 인권 개념(보편성) 대 동아시아적 가치(특수성)의 딜레마'와 그 대안에 대한 논의이다. 한상진(1996), 정영선(2000), 정진성(2000), 이근관(2002), 한국인권재단(www.humanrights.or.kr), 인권운동사

5) 그나마 이 문구는 세계인권선언 작성 당시 처음에는 '형제처럼(like brother)'이었다가 유엔여성위원회의 요청으로 '형제애의 정신으로(in the spirit of brotherhood)'로 바뀌었다(앞의 책, 47p.).

6)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재해석은 신혜수(1999), 헬렌 B. 홈스(1987)를 참조.

7) 위 두 가지 인용과 앞의 1962년 박정희 발언 인용은 이정은(1999),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 과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p.-21p.에서 재인용한 것임.

랑방(www.sarangbang.or.kr) 등은 모두 인권 논의에서 동아시아의 중요성, 인권 개념에 있어서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서의 인권,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의 장단점에 대해 논한다⁸⁾.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권 개념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 내용은 보편자로서의 서구/특수자로서의 동아시아를, 구성적이거나 임의적인 경계가 아니라 본질적 범주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서구의 '경험'은 '이론'으로 동아시아의 '경험'은 '사례'로 상정되고, 한국사회 혹은 동아시아에서 서구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인권 개념과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아시아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러한 장단점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세력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논자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은 양 담론의 절충과 조화(이근관, 2002:76-77), 동아시아 문화가 서구 중심의 인권 논의에 자극이 되도록 공동체주의 시각을 새롭게 부각시키자(한상진, 1996:26), 동양 사상의 장점과 서구 사상의 장점을 조화시켜 동서융합의 새로운 인권 사상 정립(정영선, 2000:720), 한국 문화에서 인권 가치를 살려내고 아시아 인권기구를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 범죄를 문제화하자(정진성, 2000:112-113) 등이다.

이 때 '특수한'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 정치 제도 등은 이미 '서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아시아는 언제나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간주된다. 즉, '아시아적 특수성'의 내용은 현재 고도로 자본주의화 되고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현실의 살아있는 아시아, 혼성화된 아시아가 아니라 '전통 문화'로 간주된다. 그러나 서구 문화와 다른 아시아적 가치/한국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의 논쟁은,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아시아 내부의 담론 투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리관유(李光耀)나 박정희 같은 국가(민족)주의 세력과 저항적 민족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아시아 고유의 가치가 다를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의미하는 아시아적 가치 역시 다를 것이다.

보편성을 구성하는 가치는 이미 특정 주체의 시각과 이해에 기반한 정치적 산물이다. 인간과 사회 현상을 보편과 특수성의 구도로 인식하는 것은 근대 이후 주체가 타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와 비서구,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자의 시각에서 후자가 규정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이다. 주체의 입장에서 구성되는 타자('디 아더즈', the others)는 글자 그대로 주체 외의 '나머지 것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 구도에서 아시아는 서구에 대립되는 이항적 개념이 아니라 서구-비서구의 구조에서 서구 외 기타(the others)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보편성 담론은 이미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지닌다. 정말 사회 현상을 보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특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특수성이 존재한다면 보편은 이미 보편적일 수 없는 것이다. 보편과 특수는, 권력 주체가 규정한 '차이'를 주체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지배 담론일 뿐이다.

사회적 약자가 보편자가 되지는 않으며, 억압받는 자의 경험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편과 특수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서구가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서구적 인권 개념 대 동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구도는, 그 출발점 자체가 이미 서구를 보편자로 간주하고 동아시아를 특수한 사례로 보는 것이다. 이때 물론 기준은 서구이며 동아시아는 서구 이론을 적용하는 경험 대상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도에서 한국의 인권 개념을 모색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서구/남성 중심적 지식이 구성되는 사유 구조를 답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시아인이 서구의 인식론으로 자신의 위치를 사유할 때, 보편성을 강조할 것인가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는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보편의 기준이 이미 서구인 상태에서 아시아는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해도 특수하고 서구적 가치를 강조해도 특수하다.

한국사회의 인권 논의에서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에 대한 대개의 해결 방식은 '조화'인데,

8)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권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 즉 '인권의 운동'을 중심으로 논의한 문성원(2002)은 마이클 왈저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보편과 특수 논의 구도의 맥락성과 가변성을 중요하게 주장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동서양의 좋은 것만을 취하자는 절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서구화, 근대화, 전통과 관련한 담론에서 늘 등장하는 사유 방식이다. 아시아/한국의 근대화(서구화)와 자본주의는 식민 통치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시아가 자본주의, 인권, 과학 기술 등 근대적 가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서구에 저항하고 내부의 반동적 유산(봉건, 권위주의 정권, 부패...)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입장에서 “동서양의 좋은 것만 취하자”는 논의는 서구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부정함으로서만 근대성-인권을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다. 보편자를 서구로 상정하고 특수자를 아시아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언제나 아시아의 역사는 비이론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특수자 아시아의 경험은 사례 혹은 경험일 뿐 이론이 되지 못한다. 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 이론을 만들 수 없는 현대의 아시아는, 서구적인 어떤 것이 예전에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 ‘우리’의 ‘전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인권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키기 전에 인식 주체로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position)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논자의 위치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권 논의의 작가들은 현실의 어떤 이해 관계로부터도 영향받지 않는 보편적 초월적 주체의 시선을 가진다고 간주된다. 이처럼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 인식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비론(兩批論)이거나 절충론일 수밖에 없다.

보편성 개념 자체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뿐 보편성이 구성되는 역사 자체를 비판하지 못하면, 서구가 자신을 보편자로 서구를 제외한 그 외의 세계를 특수자로 상정할 수 있는 인식 주체의 권력을 의문시킬 수 없다. 이 때 이들이 주장하는 동아시아적 가치는 서구 중심적 보편성을 비판,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수한 예로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인권 개념을 보편성-특수성에 근거하여 논의할지라도 성, 장애, 성 정체성, 인종 등에도 수많은 보편/특수 범주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런 방식의 쟁점 구성은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된 보편-특수의 경계는, 늘 서구 대 동아시아라는 국가 경계가 기준이 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력 관계나 성별이라는 범주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을 논하는 논자들은 자연스럽게 국가를 대표하게 되거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언설 방식이 현실의 이해 관계에서 초월적 주체(disinterested position)가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시각에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 혹은 공동체적 가치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 관계는 문제화되기 힘들다. 자신을 국가-민족 대표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이러한 고정된 논의 구도에서, 인권 개념의 상황적 분석을 요구하는 맥락적 질문은 나오기 어렵다. 이처럼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방식은 서구를 보편으로 상정하고 서구 외 특정한 사회에 인권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였다. 이러한 질문 방식은 실제 현실에서 인권 개념을 놓고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충돌할 때 인권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가를 논의하기 어렵게 한다⁹⁾

4. 보편성의 재구성을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운동은 장애 남성의 성을 살 권리를 침해하는가? 비장애인 중심의 여성 운동과 남성 중심의 장애운동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가? 최근 불가피한 글로벌 경제 현상처럼 논의되고 있는 이주 남성 노동자의 매춘 권리, 한국의 매춘 여성이 이주/‘외국인’ 노동자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명드는 일”¹⁰⁾인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명든 이유가

9) 김은실(2000), 「인권, 문화, 여성 : 여성인권을 논하기 위한 문화 비판 시론」, 『철학과 현실』 44호, 철학문화연구소

10) 웹진 월간 문화연대, 제 43호(2003년 10월 1일자 발행).

매춘을 거부당했기 때문인가? 보편적, 선언적으로 강조되는 인권 담론, 인권 개념의 탈맥락화와 물질치화로 인한 심각한 현실은 언제나 여성의 인권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처럼 경합하는 인권 담론간의 사회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각각의 인권 이슈들이 상호 관련성 없이 논의되는 담론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인권 이슈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간과된다.¹¹⁾

7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세력이 성장하면서 언론·출판·사상·양심의 자유를 인권으로 개념화하는 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권론은 새로운 전환을 맞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주로 공격 영역에서 국가 권력과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이나 비장애인 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등 ‘구조적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일상적 파시즘’,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사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나 억압이 기존의 인권 논의의 내용과 쟁점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기보다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부가적인, 부차적인 이슈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보편적 정의로서 인권 담론의 힘은 분명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인권은 최소한, 명분상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이상적인 가치로 간주된다. 그래서 피억압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그러한 작업 자체가 기존의 인권 담론을 문제화하거나 재구성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¹²⁾.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 피억압자의 사회운동은 남성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몸의 정상성 범주 자체를 비판하는 방식의 운동이나 담론으로 구성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억압이 인권 문제로 제기될 때 기존의 인권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인권 담론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긴장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시혜’, ‘관용’, ‘동정’, ‘다양성 인정’, ‘취향’의 차원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¹³⁾.

인간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인식 주체로서 서구/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의 권력을 문제 제기하지 않은 인권 논의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여성/동성애자/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가 된다. 이처럼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특수한 인권 문제로 보는 담론 중의 하나는, 성매매가 인권 유린인 이유를 매춘이 여성의 처녀성과 모성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남성중심적 성보수주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남성의 권리를 보편적인 권리로 상정하여 남성의 기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처녀성과 모성으로 간주하고, 이를 여성의 특수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 억압의 원인인 여성의 ‘처녀성’(남성의 처녀성이라는 말은 없으며, 남성의 처녀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다)을, 침해받으면 안 되는 권리로 보는 것

http://cncr.jinbo.net/monthly_cncr/index.php

11) 대표적으로 이정은(1999)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인권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인권 운동의 논리를 추적했는데, 분석 대상이 된 15개 인권 단체 중 여성 단체는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다. 원인은 연구자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고, 선정 근거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와 경실련이 발행하는 민간단체총람에서 정관에 인권 향상을 명시한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남성’단체들은 자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권으로 귀착시키지만, 여성운동단체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인권 단체로 선정된 「낙태반대운동연합」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생명주의의 관점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이다. 성 보수주의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이 단체는, 여성 인권의 관점과도 충돌할 수 있으며 같은 연구 대상이 된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와는 상호 적대적인 모순 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러한 갈등과 경합은 문제화되지 않으며, 모두 인권이라는 개념의 우산 안으로 숨어버린다.

12) 김형수(2001), 김은정(1999), 서동진(2003) 등 몇몇 예외적인 논의가 있다. 서동진(2003)은 최근 한국사회의 커밍아웃 문화를 문제화한다. 커밍아웃이 이성애 제도에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성애자의 규범에서의 동성애자 인정이라며 ‘커밍아웃의 이성애 중심성’을 비판한다.

13) 90년대 후반부터 <당대비평>, <아웃사이드>, <인물과 사상>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거대 담론적 사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권, 평화, ‘새로운 진보’를 역설하는 입장이 많아졌다.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진보 담론에 끼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기존의 인권이나 진보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회적 소수자를 정치적 주체로 보고 이들의 고통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진보를 ‘풍부’하기 위해 동원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서 매체마다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 기사들이 그들의 소외와 비참한 상황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기존의 인권 개념을 변화, 재구성시키기보다는 ‘포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수자 문제가 활용되는 것이다.

이다.

기존의 보편적 인간관을 의심하지 않고 피억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막상 이해 관계가 갈등하는 투쟁의 장을 만나면, 특수자(약자)의 문제를 보편자의 이해 관계로 환원시킨다. 여성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가정폭력의 원인을 군사독재 폭력문화의 산물로 본다거나 성매매나 성폭력을 외세 타락 문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 등이 그러한 인식의 대표적 예이다. 남성 중심적 담론에 근거하여 여성 인권 문제가 정의되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인권 개념이 확장되는 원인, 과정, 영역은 동일하지 않다.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은 당위적 가치가 아니라 희망하는 지향이기 때문에, 인권 개념은 인권의 적용을 원하는 사회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남성, 서구 중심적인 접근 방식인 보편성-특수성의 구도는, 유동적이고 맥락적인 '인권의 운동'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며 사회적 약자의 언어를 침묵시킨다. 여성의 지위가 점차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를 역사적으로 맥락화 하지 않는 인권 논의가 남성의 역차별 심리를 인권의 개념으로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서구/백인/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 중심의 인권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타자들의 경험이 기존의 보편적 인권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사회적 약자가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간'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의 입장을 '여성 이기주의', '장애인 차별',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남성 장애 인권 운동가의 전제는 장애 남성도 비장애 남성과 똑같이 매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장애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보편적인 장애 인권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부 장애 남성의 주장은 그들 자신이 비장애 남성으로부터 차별받으면서도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성 성기 중심적이며 여성과 장애인에게 억압적인 이성애자의 섹스를 끊임없이 모방함으로써 정상성을 욕망 하는 것이다. 장애 여성, 비장애 여성, 장애 남성은 비장애 남성 섹슈얼리티의 공동의 피해자이다. 어떤 의미에서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 현재 비장애 남성 중심의 인권 개념의 재구성은 비장애 남성 섹슈얼리티의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적 타자들의 연대에 의한 대안적 섹슈얼리티의 실천에 있다. 대안적 인권 개념, 맥락적 인권론, 인권 개념의 재구성은 새로운 정치적 상상과 실천의 과정 속에서 고민되어야만 한다.

참고 문헌

김은실(2000),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문화는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공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0), 「인권, 문화, 여성 : 여성인권을 논하기 위한 문화 비판 시론」, 『철학과 현실』, 44호, 철학문화연구소

김은정(1999),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한국장애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김형식(2001),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당대비평』 14호, 삼인

나오키 사카미(2001), 「서문」, 『흔적』 창간호, 문화과학사

문만식(2002),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구소 (www.sarangbang.or.kr/kr/inst)

문성원(2002),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자유주의 인권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편, 삼인

서동진(2003), 「커밍 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한다」, 『탈영자들의 기념비-한국 사회의 성과 속, 주류라는 신화』, 박노자 외 공저, 생각의 나무

서동진(2003), 「성적 시민권의 정치학과 비이성애적 주제」,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3년 한국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 공동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신혜수(1999), 「여성관련 국제협약과 여성운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도서출판 한울

전희경(2003),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을 할까」,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정책위원회 토론 자료, 미간행

정영선(2000), 「아시아적 인권과 문화적 상대주의」,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사람생각

정진성(2000),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한길사

애니타 알렌(1987), 「여성과 프라이버시 : 무엇이 문제인가?」, 『지배로부터의 자유 - 여성 철학의 새로운 시각』, 캐롤 C. 골드 편, 한국여성개발원

이근관(2002),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인권의 보편성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 편, 삼인

이정은(1999), 「한국에서의 인권개념 형성과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캐더린 맥키년(2000),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브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커스틴 쉘라스(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펑 치아(2001), 「보편적 지역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아시아 연구」, 『흔적』 창간호, 문화과학사

한상진(1996),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계간 『사상』, 1996년 겨울호, 사회과학원

헬렌 B. 홀스(1987), 「세계인권선언의 페미니즘적 분석」, 『지배로부터의 자유 - 여성 철학의 새로운 시각』, 캐롤 C. 골드 편, 한국여성개발원

Tessa Morris-Suzuki(2000), "Anti-Area Studies", Communal/Plural, Vol. 8, No. 1

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22일자. "성폭행범 유전자은행 논란"

한국인권재단(www.human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월간 문화연대 제 43호(http://cncr.jinbo.net/monthly_cncr/index.php)

제18기 인권학교

강의2. 장애여성의 인권: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들어가며

신생아성감별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장애인은 생존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생아가 '기형아'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면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낙태는 당연지사라고 되고 만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기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기준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행한 삶이고, 불행한 인생이 될 운명은 아예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낙태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아도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남아선호사상의 희생물로 낙태를 당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으로 여성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장애여성의 일생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장애여성의 현실과 그에 따른 상담을 통해본 과제들을 다루어 볼까 한다.

1. 장애여성이라는 이유

장애여성들은 어려서 여성이기보다 성이 없는 존재 즉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살아왔다. 여성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가사, 보육, 성, 남성에게 각종 서비스)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여성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여성이 해내야 하는 역할은 남성의 내조자로 성적 제공과 가사전담과 출산에 따른 육아보육 등을 해내지 못하면 여성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장애여성들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거의 방치 상태로 놓여지거나 영원한 의존자로 규정되어진다. 그래서 장애여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살아나 가게 된다.

한 가정 안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교육과 재활과 사회화는 온전히 가족들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딸에 대한 지원을 가족들이 담보해내지 못하면 장애여성은 가정 안에서 고립되고 방치 되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오던 장애여성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독립을 꿈꾸어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꿈은 꿈으로 끝나고 끊임없는 자아상실을 경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애여성이 학력이 낮거나 장

애가 중증일 경우엔 사회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사회 평화적인 천사 모습에 만년 소녀적인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제나 존중을 못 받고 장애여성의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수직적 관계에 놓여짐으로 많은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장애여성의 위치는 장애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들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는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성폭력은 이제야 겨우 장애여성전문 상담소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대안이 나온 지경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는 쉼터도 태부족하여 성폭력 당하고 위급상황에 놓인 장애여성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과 할 수 없는 장애여성의 가정폭력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하다. 유아 때 장애를 가지게 된 여성들이나, 성인이 된 후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는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2. 교육, 취업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본다.

장애여성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2000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8%가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다. 남성장애인(41.4%)과 비교해 볼 때, 장애여성들이 현저하게 낮은 학력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장애여성	68%	장애남성	41.4%
------	-----	------	-------

'2000년 전국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국사회연구원)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에 낸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의 조사에 보면 고등학교 학력이 29.9%로 가장 많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여성도 11.1%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무학 초등학교 학력은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역시 장애여성의 학력은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도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장애여성의 학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까지 가진 딸을 힘들게 공부시킨다 해도 비장애 중상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에 끼어서 성공 할 가능성에 대한 희박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애 때문에 학교에 접근 할 수 없는 많은 현실들이 있다. 우리나라 정규교육의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편의시설 부족과 이동문제 또한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없음과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어야 한다는 차별의 깊은 인식은 통합교육을 막게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먼 특수학교를 찾아 이사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이 강요된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를 가진 딸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 앞을 나설 수조차 없는 장애인동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취업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교육이 장애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장애여성이 취

업하고 있는 직종은 판매, 서비스직(33.3%)이며 생산, 노무자(25.5%) 취로사업(22.5%)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로는 일용직 근로자가(29.1%)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17.4%)로 나타났다.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자	취로사업	일용직	자영업
33.3%	25.5%	22.5%	20.1%	17.4%

'2002년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 연구자료에 나타난 소득정도를 살펴보면 앞의 흐름이 장애여성이 어떤 악순환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가 59.4%로 과반수를 넘으며 100만원 이하까지 합하면 전체의 86.8%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 50만원 이하 저임금은 특히 정신장애(85.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71.4%), 뇌병변(70.0%)보다 높다.

정신장애	정신지체및발달장애	뇌병변
85.7%	71.4%	70.0%

'2002년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와 같은 조사가 말해주듯이 장애여성의 현실은 낮은 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사회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대안은 없다.

3. 이전 장애여성이 말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은 1998년에 창립된 장애여성인권운동단체 이다.

우리 사회에 장애여성인권은 논의 밖에 있을 때 장애여성의 사회적 취약한 위치에서 놓여 있음으로 발생하는 장애여성인권유린의 현실을 고발하고 장애여성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단편적으로나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은 장애여성의 현실은 장애여성의 일생을 두고 자아상실과 자신의 정체성 혼란과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이 활동을 하면서 장애여성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여러 상담을 하게 되었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2003년 주제를 '폭력'을 하였다.

2002년엔 '장애여성의 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성적 존재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개기가 되기도 했다.

창가에 앉아 사람이 지나가면 '여자가 지나갔다.' '남자가 지나갔다.'라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 지나가면 '장애남성이 지나갔다.' '장애여성이 지나갔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이 지나갔다'라고만 할 뿐이다.

이 만큼 장애인에게 성의 정체성이 없었다.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애인 화장실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남 여 구별이 없다.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사용해야 함으로 장애여성들은 늘 불결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때론 장애인 화장실이 비장애남성 화장실 앞을 거쳐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 장애여성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얼마나 고민 없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고민 없음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차별들이 뿌리 깊고 대응력 없고, 선택권 없는 장애여성들은 고스란히 감수하며 살아간다. 어려서 장애를 가지게 된 여성이나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여성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무시와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존감 없고 자아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는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표현이 힘들고 자기 권리를 찾지를 못한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장애여성들 중에 이성교제의 어려움도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한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할 경우 모성권(母性權)을 박탈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자녀들까지 빼앗겨야 할 때 장애여성들은 자녀들과 살기 위해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아가며 사는 경우도 있다.

'2002년 장애여성공감 교육과정'에서 주제로 다룬 '장애여성의 성'에서 이러한 차별성이 보여 진다.

어려서 초경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은 결혼을 하지도 못 할 것이고 출산도 못 할 텐데 생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물론 심한 경우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한 예도 있어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 여성도 아니고 성의 정체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시설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것이 인권유린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설장들도 있다. 장애여성들은 초경에 가족들이 보인 부정적 반응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족 사이에서도 당연히 결혼을 못할 사람으로 제외시키고 여성으로서 인정 받을 때는 가사를 전담하고 있을 때뿐이다. 비장애 형제들을 대신해서 가사를 전담하며 자신의 삶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장애여성들이 있다.

장애여성들에게 있어 '성'이란 것은 그녀들의 사회적 하나의 소통이다. 장애여성들이 비장애여성들과 다른 특별히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같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장애여성은 이성교제의 기회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장애여성에게 '성'은 하나의 사회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 주변에서 정체성 혼란을 주는 경험들을 하게 됨으로 성장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도 장애여성에게 성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된 상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2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여성 서울 경기지역 165명의 장애여성을 '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장애여성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대부분 외출조차 하지 않는 몰혀 살고 있는 장애여성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이 길지 않아서 시설에 있는 장애여성들과 장애여성공감 활동하는 회원들과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한다는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폭력 경험 및 조치'(장애여성 성인식 실태조사'자료집 p47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성폭력경험이 20%로 었다. 이러한 폭력에 긍정적 대처능력도 놀라울 만큼 높게 나타났다.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지만 '참는다'75.0%라고 응답한 연령은 40대였다. 반면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38.5%는 10-20대였다.

어느 정도 사회 활동하는 장애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와 학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 및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폭력대처 방안엔 '참는다. 도망친다'가 67.5%로 나타났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개소'한지 2년여가 되어가면서 장애여성 문제의 현장을 본다.

'장애여성들에게 누가 성폭력을 할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여성들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네 남성들에게 성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은 장애여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웃은 '모자란 여자에게 무슨 인권이냐'하면서 가해자옹호를 하며 피해 장애여성과 가족들에게 제이차 가해를 서슴없이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차별적인 인식은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참는다. 도망친다'가 맞는 것이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현실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현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들을 경험하면서 당연스럽게 운명처럼 살아왔다.

또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은 같은 여성인 어머니 자매간에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가정안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 자매간에 분노 표현이 가장 힘 없는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시설내 폭력을 당하는 장애여성들도 그렇지만 가정내에서나 시설내에서 폭력을 당해도 장애가 중증일수록 참으며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디에 갈 곳이 없고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장애여성의 현실에 특히 정신지체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성매매의 현장으로 유입되어지고, 그 곳을 탈피할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사회현태 분노하지도 못하고, 모두를 자기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수용하려고 하다보니 우울증과 무력감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과 무력감은 또한 몸으로 후유증을 나타내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나오며

때로는 아주 멀게도 느껴진다.

장애여성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이...

장애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차별의 벽은 높고 견고하기만 한 것 같다.

장애여성을 절대 존중하지 않은 반말과 어린애를 대하는 듯한 가르치려하는 태도들, 과잉 친절함에 보여지지 않는 수직관계의 불평등을 느낀다.

장애여성의 다양한 경험들이 존중되어지는 것을 장애여성은 원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장애를 부정하거나 비장애와 같은 몸이 되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여성으로 자유로운 사회, 그것은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장애여성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언어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장애여성이 원하는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장애여성이라는 말조차 생소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여성들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차츰 장애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사회를 발견할 땐 희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희망으로 오늘도 장애여성을 만난다.

제18기 인권학교

강의3. 이주여성의 권리: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청암교회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유엔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채류 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약칭 외국인 인권선언)을 채택한 후에 1990년 12월 18일 열린 제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¹⁴⁾ 이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의 취지는 이주(외국인)노동자로 분류된 사람은 그 법적 지위 즉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오랫동안 비준하는 회원국가가 규정에 미치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주(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규약이 채택된 후에도 13년이 지나서야 발효되고, 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수입국 대부분이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주소이다.

1. 한국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¹⁵⁾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계속 일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언제 체포되어 강제로 추방될지 두려워요. 우리도 마음놓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싶어요.”

200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이른바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¹⁶⁾가 289,239명으로 80%에 이르고 10%가 산업연수생이며 근로기

14) 앞의 책, 81쪽.

15)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란 용어정의 :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주(migrant worker)라는 말을 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대신에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느는 추세인데, 이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배타성을 배제하고 동등성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뜻에서 외국인여성노동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16)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준법상 근로자는 10%에 불과하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소위 3D업종(difficult, dangerous, dirty)에서 일하며 한국경제에 일손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 구금, 폭행, 옥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권 침해와 기본권 침해, 연수제도의 폐해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¹⁷⁾ 이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①법적 지위의 취약성 ②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 폭행, 비하 등) ③자유롭고 안전한 사회생활의 억제(여권과 신분증 압류, 감시, 외출통제, 감금 등) ④언어소통과 배타주의적 문화에의 적응곤란 ⑤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⑥ 비인도적인 단속과 추방 ⑦국제결혼생활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⁸⁾

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원인

1997년 입국한 방글라데시아인 하피지(28)도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한 명이다. 그가 입국해서 맨 먼저 배운 말은 “니네 나라로 가, 이 새끼야!”였다. 일이 서투를 때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도, 회식을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할 때도, 그는 항상 이런 옥설과 함께 “시꺼먼 놈이 뭐 하러 왔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 이렇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원인에 대해 성공회대학 박경태 교수는 일반적 원인들과 한국사회 특수성에서 오는 차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¹⁹⁾

일반적 원인으로는 사회심리학적 원인, 민족중심주의와 사회화,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서는 사람들은 같은 범주로 구분되는 개체들을 모두 그 범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범주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범주화가 지나치면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 고정관념은 해당집단의 모든 개개인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된다. 따라서 불평등한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수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다수집단이 느낄 수 있는 도덕적 모순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억압된 본능의 좌절을 심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성의 권위 대신 안전한 표적을 찾는데, 이 때 힘없는 소수자는 매우 안전한 표적이어서 좋은 희생양이 된다.

둘째, 민족중심주의는 외부인을 의심하고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으로, 외부인은 이방인, 야만인 혹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등한 나라의 문화는 대체로 미개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미국으로 상징되는 ‘백인’의 문화는 고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일단 형성된 편견과 차별은 사회화를 통해서 세대간에 전승되어 새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도 그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셋째, 경쟁과 적자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불평등한 체제는 우월한 자에 대한 축복, 열등한 자와 경쟁에서 낙오된 자에 대한 가차없는 배제를 초래하였다. 결국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결합된 집단 이기주의는 소수자,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차별 원인에 덧붙여서 한국사회만 갖고 있는 차별의 특수성이 있다. 한국사회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경험을 하면서 해방을 위해 민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성장하여 외국(인)

17)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란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18)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연구, p. iv.

19) 박경태 교수는 2001년 4월 11일 성공회대학에서 실시한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 교육에서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와 소수자 차별’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교육자료. 참조.

에 대한 중요성을 불러일으켰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겪은 냉전과 그 이후에 형성된 경제발전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배타성을 확산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분단상황이 유지되고 대미 의존적 구조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점점 더 내재화되고, 여기에 미디어에 의한 왜곡은 이러한 차별을 심화시켰다. 대부분 한국의 대중매체는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백인(미국인)만이 우호적으로 묘사되고 비백인(흑인, 황인 등), 이슬람권, 공산권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오슬로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민족주의라는 미명 하에 집단주의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를 그 원인으로 들고있다. 집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생명과 행복쯤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야만적인 집단주의, 남성적인 폭력으로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저질의 폭력숭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보편적인 인권들을 비웃고 부정하는 현대적 보편주의와 관대함의 부재, 무엇보다 가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특유의 집단광기는 바로 극좌와 극우의 공통점이라는 것이다.²⁰⁾

3.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중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3) 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1.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7.3%²¹⁾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²²⁾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생리휴가는 물론,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해 1995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이주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들 조사를 통해서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들은 1)여성 차별적 임금과 대우 2)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성 산업에의 유인 강요 5)여성기숙사의 부족²³⁾과 같은 특유한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02년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이주여성노동자실태조사”²⁴⁾를 통해서 외국

20)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1. 51쪽.

2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111쪽.

22) 국내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의 수와 성별 비중을 보면, 1999년도에는 72,459명(35.6%), 2000년에는 94,359명(35.1%), 2001년에는 207,829 명(64.1%)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엘림·오정진.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년, 16쪽.

23) 김엘림·오정진.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년, 쪽.

24) 한국염,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 『여성이

인이지여성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알아보자.

(1) 여성이주노동자의 주거지와 근무환경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 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36.7%가 현 직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였고, 23.4%가 2년 정도 직장을 옮겼다고 하였다. 직장을 옮긴 이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4.4%로 가장 많았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는 음식이 19.6%, 의복 12.2%, 주거/숙소 16.9%, 금전 35.3%, 성생활 9.5%, 건강 25.5%, 기후/날씨 18.1%,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험 38.3%이 문제라고 하였다.

많은 수의 여성 이주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한 달 내내 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임신, 유산 후에도 업무부담이 줄지 않고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성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로 인해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가 여성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라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체류로 인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 장시간 근무강요는 물론이고, 저임금, 임금체불, 성폭행,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럼에도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어도 혼자 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는 오히려 고민을 이야기하였다가 강제출국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부당한 구조를 양성하게 된다. 70% 이상의 많은 여성이주노동자가 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상담소에서 고민을 이야기한 많은 여성이주노동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이주노동자의 성, 임신, 출산실태와 관련하여²⁵⁾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64.1%가 모른다고 하였고, 56.7%가 사용하지 안하겠다고 하였으며, 46.8%가 임금삭감의 두려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포기하고 있었다. 15%가 한국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는데 이들 중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에도 힘든 일을 해야 했고, 66.7%가 해고당할까 무서워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다.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

주노동자인권실태보고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 77쪽.

25) 이 조항은 원래는 모성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나 모성이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성, 임신, 출산이라고 풀었다. 때에 따라서는 법률적 개념으로 모성보호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은 기혼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장은 임신 여성을 위해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임신을 한 여성이주노동자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에도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을 해서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주노동자가 반 이상이 되는 것도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신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주를 통해 업무변경을 중재해주고, 임신·출산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모성보호센터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3) 여성이주노동자의 성폭력 실태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를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퇴근 이후였고, 사업장 내에서, 주로 한국인 사업주나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인이고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업무를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성폭행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주노동자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을 해도 결국은 직장상사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고 위협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오히려 여성이주노동자가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성폭행으로부터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예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상담소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병원과 변호사,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책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Asian Migrant Center가 발행한 'Asian Migrant year Book 2000'의 통계에 의하면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수는 남성노동자 수에 못 미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의하면 곧 남성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2.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

사례1) 사기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의 이야기

본 센터의 여성쉼터가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 채 한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찾아왔다. 6월 19일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그들이 일할 장소가 애초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약속과 달리 유흥업소 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6월 21일 속

소에서 도망쳐 피신을 온 것이다. 류바(26살)는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영어학을 전공하던 중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다. 비까(22살)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다가 이혼을 하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였다. 한국 입국을 알아보면 중 취업비자로 입국을 시켜 주겠다는 중개인 조직의 안내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취업비자라는 약속과는 달리 B-2비자(관광, 통과 목적)를 이용해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유흥가의 클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와 있던 외국 여자가 구타당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숙소에는 10여명의 외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곳 관리자는 이들이 들어서자마자 한 여성을 개 패듯이 때려 "앞으로 도망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고 위협하고 이들이 일할 클럽을 보여 주면서 "손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었다. 원래 계약에는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주고 또한 계약을 어기면 2천 달러를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 조건과는 달리 음식점 종업원이 아닌 유흥업소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2천 달러를 갚을 수도 없어서 이들은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미용실 가는 시간을 이용해 이들은 그곳을 탈출하였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친구를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고 한국 친구의 도움으로 센터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녀들의 눈빛은 한국인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찼었고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 류바는 한국인에게 영어 개인 교습을 하고 돈을 벌며 귀국하였고 비까는 식당에서 일을 하여 귀국하였다.

기획사에서는 이들을 체류지 이탈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센터에서 출입국사무소로 매춘강요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 가운데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²⁶⁾ 있을 정도로 성산업업으로의 유입강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주여성의 성산업업으로의 유입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입과정이 대부분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는 성산업 또는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²⁷⁾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상담 접수 사례에 의하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주여성의 경우 생산직 공장 취업 미끼, 국제결혼을 빙자한 경우, 공연예술 빙자 등 전형적인 취업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공연예술비자로 들어 온 여성들의 경우에 성매매 현장업으로의 유입이 심각한 현상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매매인 것을 알면서도 택한 여성들 경우도 있는데, 빈곤의 여성화가 빚어낸 폭력이다.

세움터의 김현선에 의하면 1996년 이전에는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중 소수가 공장에서 실직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가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미군기지촌의 성매매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²⁸⁾

성산업 업소에서의 외국인 여성 문제는 최근 2002년 4월에 미국 폭스사의 외국인여성 강제 성매매와 인신매매 의혹사건 방영, 2003년 8월의 타임지 아시아 판 보도, 성산업 업소에서 도망친 필리핀 여성의 신고

26)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35

27) 인신매매란 유엔이 제정한 2000년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르면 "타인의 성매매, 성 착취, 장지지 절제, 강제노동, 노예생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부력, 기타 강압적인 방법 또는 납치, 사술, 기망, 권력이나 궁박 상태의 남용,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제공 등의 불법적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수송, 이전, 유치 또는 인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여성부주최 2003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자료집, 9월 22-23일 개최, p.2

28) 김현선, 미"군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p.3, 2002

를 받은 필리핀 대사관의 사건해결요청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 12일에 미국무성이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내어 국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다(2002년 2차 보고서에는 1등급 국가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례2) 한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이야기

"업주들은 이 여성들에게 한 달에 주스를 200잔 이상 먹기를 강요합니다. 물론 클럽 내에서만 한달에 200잔 이상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은 티켓을 끊어 이차를 나가야 합니다. 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곧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른 시간에 끊으면 300\$, 늦은 시간에 끊으면 150\$ ~ 200\$에도 된답니다. 이 금액에서도 업주는 70%를 갖고 여성에게는 30%를 주지요. 이 돈은 여성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주스 잔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이차를 나가면 주스 몇 잔을 판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 손님들도 들어오는데 그들은 한국돈 20 ~ 25만원씩 지불하고 여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티켓이 200잔 이하가 되면 업주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 월급을 착취당하고, 심한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당하거나 다른 업소로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영업시간 이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감시합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클럽 영업이 끝나면 숙소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낮에는 잠깐 동안 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권도 업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 주인들은 완전히 포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여성이 몸이 아프거나 임신이 되어도 본인의 돈으로 낙태수술도 받아야 낙태수술도 받아야 하고 약값도 지불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도 빚이 됩니다.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에이전시에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만 합니다." ²⁹⁾

이 여성의 이야기는 인신매매로 들어 온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당하는 고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대부분이 여권을 업주에게 압수당하고 나체쇼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착취당하며 위협이나 협박, 구타, 강간 등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신고하면 무조건 추방되면서 범죄조직의 협박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³⁰⁾

정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이 자리를 공연예술비자(E-6비자)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로 대체되고 있다.³¹⁾ 그 가운데 기지촌은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 소련권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대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공연예술비자(E-6)로 들어 온 여성들에 대한 성산업 유입이 문제되자 정부는 2002년 6월 1일자로 무회로 들어오는 E-6비자를 중단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무회 대신에 가수나 다른 직종, 심지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9) 김현선, 상계서. p.12.

30) 외국여성 성산업 실태에 관한 최근의 보고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세움터(2001),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두레방에서 조사중인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김한철(2003), 경기북부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여성 실태조사,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기지촌의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등이 있다.

31)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부터 유입된 여성들로서 2002년의 경우 예술홍행비자 입국자 약 6,500명중 약 83%가 여성무회 자격으로 입국, 유흥주점에 유입되어 윤락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3 국제인신매매방지전문가회의 자료집 p.33

한국정부는 이들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을 위해 센터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일단 강제출국 시키는 것으로 사건 종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여성의 성산업 유입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돈 벌러 온 이들에게 출국조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인신매매 업자들의 범죄단서만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밀입국이나 불법취업, 윤락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 피해 당사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 하에서 어느 외국인여성이 신고를 하겠는가? 신고 시에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신고자, 탈출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선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과 보호시설 제공 등 적극적으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신매매와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제반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성매매 착취는 국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국가적인 공조와 여성운동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3. 국제 결혼한 여성의 실태와 과제

현재 외국인이주여성들의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노동자의 국제결혼 실태파악은 잘 안되고 있으나,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의 수도 해마다 증가, 2002년에는 11,017명이 입국하였다. 이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5,131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통계청 2002).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제결혼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 하는 한국여성들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남성노동자와 외국인여성노동자 간의 결혼이다.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한 경우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급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어려서 아직은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나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 배우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이 복합되어 다중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생활의 위기는 물론 인격 장애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브로커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재 가난한 제삼세계 여성들과 한국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이미 전통적 개념의 결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알선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데, 그 일은 상업화된 결혼시장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혼시장의 브로커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제삼세계 가난한 여성과의 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까지 갖고 있으며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그 배우자 여성은 구타와 외출 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경제를 위한 노동활동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나가는 말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Asian Migrant year Book'

의 통계에 의하면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수는 남성노동자 수에 못 미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의하면 곧 남성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선언 32조항과 관련된 행동 조항에 의하면 "정부는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한다. 불법 체류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³²⁾고 명시함으로써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이와 관련된 비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세계회의(약칭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는 여성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다중의 장애가 교차할 때, 성차별을 포함한 'Gender Issues' (성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성과 인종차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1999년의 동 협약의정서에 가입하였다. 2001년 '남녀 평등한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는 국내의 남녀차별 극복과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에 관심하여 제도적으로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국제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한 센터지원을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노동자의 근본적인 인권보장이나 일반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성차별과 성희롱과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반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금지법의 적용은 물론,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이주여성이 불이익을 격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UN이주노동자협약은 여러 가지 국제 인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 관련규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단지 사고파는 노동력이라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인권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이주노동자도 권리를 지닌, 나아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이주노동자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된 것처럼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들이 제정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국내여성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이주여성들의 권익향상운동에 자매정신으로 연대한다면, 이주여성의 인권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32)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p.87

제18기 인권학교

강의4.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박김수진(박통)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1. “여성 생리=혐오 3등급”, “동성애=퇴폐 2등급”

- (1) 인터넷내용등급제
- (2) 국가인권위원회법

2. 동성애 원인

- (1) 본질주의적 접근방식(전두엽 절제 수술, 전기쇼크, 손가락 길이...)
- (2) 사회구성론적 접근방식

3. 동성애자 인구에 대한 통계

4. Homophobia

- (1) 역사차원(원손잡이/금발애자/불임자...결국은 “차이”의 문제))
- (2) 개인차원(내 안의 호모포비아, 네 안의 호모포비아)
- (3) 제도차원(청소년보호법, 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4) 사회문화차원(“한국은 레즈비언의 천국”, “이성애주의 언어 폭력”...)

5.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1) 속상한 이야기

- 1) 고 육우당의 죽음
- 2) 더 월 2
- 3) 협박 강간
- 4) 협박 금품갈취
- 5) 스토킹
- 6) 아웃팅

7) 성폭력 가정폭력

(2) 내 안의 호모포비아 치유하기

- 1) 예수님 머리위의 황금쟁반
- 2) 심각한 나의 증상

- 쇠사슬

- 레스보스 방문기 : 거짓말의 대가, 대학생은 없다, 화장실 안 은색 쇠사슬 언니들, 레몬에이드, 짱뽕

- 3) 이반 친구를 반드시 만들자.
- 4) 여기저기 가리지 말고 쫓아다니자.
- 5) 독서와 인터넷 서핑을 즐겨하자.
-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3) 네 안의 호모포비아 치유하기

6. 561인 한국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결과

2004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조사 개요

(1) 종교 분포 현황

① 561인 레즈비언 종교 분포 현황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빈도(명)	119	109	54	12
비율(%)	21.2	19.5	9.6	2.1

② 한국 국민 종교 분포 현황				
비율(%)	23.9	20.1	9.3	1.3

① 연구자의 조사 결과표

② 출처 : 『한국의 사회지표』 ; 1999, 통계청

종교 분포도는 기독교 21.2%(119명), 불교 19.4%(109명), 천주교 9.6%(54명), 기타 종교 2.1%(12명)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47.6%(267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99년에 3만 명을 표본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비율은 53.6%에 이른다. 서울 지역 조사의 경우, 기독교 23.9%, 불교 20.1%, 천주교 9.3%, 기타 1.3% 등의 종교 분포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자의 조사에서 역시 레즈비언들의 종교 분포도가 기독교 21.2%, 불교 19.4%, 천주교 9.6%, 기타 2.1%로 나타났는데, 1999년 통계청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종교·사회적 논의 및 사회문화적 시각을 일정 정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한국 종교계에서 다루어지는 부정적인 동성애 담론은 동성애자의 인격과 인권을

■ 조사명 : 『2004 국내 레즈비언 인권실태조사』

■ 조사단체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실시

■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내 레즈비언의 인권실태를 수치화하여, 국내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 과제 선정 및 레즈비언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30대 레즈비언 561명

■ 표본추출방법

- ① 성적체성을 '드러내기(Coming Out)'가 어려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서를 감안할 때, 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의 파악 및 선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에서는 표본표출방법으로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였다.
- ② 조사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판단표본추출법(judgment or purposive sampling)과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중복 사용하였다.
- ③ 모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사례 수집 및 조사를 위해 국내 레즈비언 업소 8개(서울 : 4개 업소, 부산 : 4개 업소)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판단표본추출법(judgment or purposive sampling)과 서울 50% 이상, 부산 25% 이상, 기타 지역 25% 내외의 비율로 선정하는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수 561.

■ 조사방식

총 6개 항목,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지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 자료분석방식

통계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10.0 사용 빈도분석 실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기독교계의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혐오는 극에 달했다 할 수 있다. 다수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기독교 신자 중 있을 수 있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부정의 차원을 넘어 동성애자를 '사회의 악'·'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자' 등의 낙인을 부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의 21.2%는 기독교 신자이며, 9.6%는 천주교 신자이다. 이는 그간 '존재할 수 없는'·'존재해서도 안 되는' 동성애자의 존재가 기독교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성적체성 고민 시작 시기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무응답	계
빈도(명)	36	353	158	8	6	243
비율(%)	6.4	62.9	28.2	1.4	1.1	100.0

언제부터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조사 결과는 10대 62.9%(353명), 20대 28.2%(158명), 10세 미만 6.4%(36명), 30대 1.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69.3%(389명)가 10대 이하의 시기에 자신의 성적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과 동성애의 상관관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의학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상담 기관에서는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장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 혹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조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동성애자라 함은 20대 이상의 성인 인구인데, 조사 결과 69.3%라는 결과가 증명하듯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에 관한 고민을 10대 이하의 시기에 시작한다.

조사 결과, 동성교제의 경우에도 50%가 넘는 레즈비언들이 10대 이하의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29.6%(166명)는 청소년 시기를 지난 20대 이후에 성적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의 원인설에 관한 부정적인 설명 중 상당수는 '동성애는 선천적'³³⁾이라는 것인데, 연구대상자의 30%에 달하는 수가 20대·30대부터 성적체성을 고민했다고 응답하고 있음은 동성애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형태임과 동시에 성적체성이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 실시한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적인 한계 즉, 40대 이상의 레즈비언 인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을 상기할 때, 20대·30대 이후에 성적체성 고민을 시작한 레즈비언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레즈비언 정체성은 10대 이전·이후 시기, 교제 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성된다.

(3) 최초 동성교제 시기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계
빈도(명)	6	301	208	13	1	529
비율(%)	1.1	56.9	39.3	2.5	0.2	100.0

동성과 교제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있다' 95.0%(533명), '없다' 4.3%(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동성교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동성교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533명 중 529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는 '10대' 56.9%(301명), '20대' 39.3%(208명), '30대' 2.5%(13명), '10세 미만' 1.1%(6명), '40대' 0.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청소년들의 금기 사항 중의 하나인 양 여론화하여 결국 성장기에 자신의 성적체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즉, '동성애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현실 안의 레즈비언들은 성적체성 고민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물론 동성

33) 동성애 문제에 관한한 일관성을 잃은 논리들은 일반화되어 있다. 그 중 '동성애자는 선천적이다'라는 주장과 '청소년 동성애자는 없다'라는 주장이 양립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애자라는 성적체성을 부정하기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같은 성의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기의 어떤 공간에도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고는 한다. 중국에는 신경정신과를 찾거나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조사들은 청소년 자살 동기의 50% 이상이 '동성애'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³⁴⁾

(4) 성적체성 부정 경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빈도(명)	282	275	4	561
비율(%)	50.3	49.0	0.7	100.0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있다 50.3%(282명), 없다 49.0%(2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의 과반수인 50.3%가 동성애자라는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5) 성적체성 부정 이유

	빈도(명)	비율(%)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93	19.3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69	14.3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143	29.6
동성애자로 살아 갈 자신이 없어서	112	23.2
종교적인 이유로	30	6.2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14	2.9
기타	22	4.5
계	483	100.0

성적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282명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조사 결과는 '가족·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29.6%(143명),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23.2%(112명),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19.3%(93명),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14.3%(69명), '종교적인 이유로' 6.2%(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는 282명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282명 중 276명이 응답하였다. 276명이 1인당 평균 1.6개 항목을 선택, 총 483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레즈비언의 과반수인 50.3%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경험이 있고, 성적체성을 부정한 원인에 관한 결과는 '가족·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29.6%(143명),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23.2%(112명),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19.3%(93명),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14.3%(69명), '종교적인 이유로'

34)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주최 "대안적 성교육과 청소년 동성애 이해를 위한 교사 토론 세미나" 자료집, 연대미상

6.2%(30명) 등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의 상당수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상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가지도록 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결과이다.

성적체성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에 관한 두려움,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사회·문화적인 교육의 결과 동성애자 스스로 내면화한 동성애혐오증 그리고 보수 종교계에서 설파하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편견과 동성애혐오적인 이데올로기 유포는 결국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찰하고, 긍정적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비롯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유포 및 확대는 결과에서 보여 지듯 레즈비언 스스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의 40%는 이성과의 교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성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 하에서 그리고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성과의 교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이성애중심주의와 동성애혐오를 기반으로 조직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승리이다.

(6) 성적체성 고민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사회·문화적 차원

	혈연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교우 관계	이성 결혼	'비정상'이라는 생각	기타	계
빈도(명)	414	135	86	181	188	193	117	73	1387
비율(%)	29.8	9.7	6.2	13.0	13.6	13.9	8.4	5.4	100.0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중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61명 중 554명이 응답하였다. 554명이 1인당 평균 2.5개의 항목을 선택, 총 1,387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관한 결과는 '혈연 가족 관계' 29.8%(414명), '이성 결혼' 13.9%(193명), '교우 관계' 13.6%(188명), '직장 생활' 13.0%(181명), '친인척 관계' 9.7%(135명), '비정상이라는 생각' 8.4%(117명), '학교생활' 6.2%(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7) 동성 교제 과정에서의 어려움

	빈도(명)	비율(%)
고백하기 어려운 것	103	10.7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289	30.0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280	29.0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던 것	105	10.9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	57	5.9
동성애와 관련한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점	60	6.2
본인 혹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 때문에	47	4.9
관계 지속이 어려웠던 것		
기타	23	2.4
계	964	100.0

동성 교제의 경험이 있는 533명 중 409명이 응답하였다. 409명이 1인당 평균 2.4개 항목을 선택, 총 964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동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에 관한 응답 결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30.0%(289명),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 29.0%(280명), '문제가 생겼을 때 상의 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던 것' 10.9%(105명), '고백하기 어려운 것' 10.7%(103명), '동성애와 관련한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점' 6.2%(60명),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모임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 5.9%(57명), '본인 혹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 혐오 때문에 관계 지속이 어려웠던 것' 4.9%(47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이유

	빈도(명)	비율(%)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211	37.6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21	3.7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167	29.8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125	22.3
무응답	11	2.0
기타	26	4.6
계	561	100.0

커밍아웃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사회 인식' 37.6%(211명),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에 관한 두려움' 29.8%(167명), '커밍아웃 이후에 발생할 학교에서의 징계·직장에서의 퇴직 등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22.3%(125명), '변태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3.7%(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성적체성 고민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심리·정서적 차원

	자해 욕구	자해 시도	자살 욕구	자살 시도	두려움·공포	비하 발언	따돌림·왕따	물리적 위협	기타	계
빈도(명)	64	74	120	50	256	349	48	55	99	1,115
비율(%)	5.7	6.6	10.8	4.5	23.0	31.3	4.3	4.9	8.9	100.0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중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61명 중 518명이 응답하였다. 518명이 1인당 평균 2.2개의 항목을 선택, 총 1,115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심리·정서적 차원에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관한 결과는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동성애 비하 발언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31.3%(349명),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다' 23.0%(256명),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10.8%(1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 6.6%(74명), '자해 욕구 경험이 있다' 5.7%(64명),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4.9%(55명),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4.5%(50명), '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이 있다' 4.3%(48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개인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동성애 비하 발언을 접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낀다면, 그 누구도 자신을 혐오하고, 자학의 욕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정서적 위협을 경험하는 경우에 혹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국 사회는 레즈비언 개인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도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동성 교제 관계를 완벽한 비밀로 부치고, 곤궁에 처했을 때 역시 온전히 당사자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으로 레즈비언을 몰아간다.

이러한 체계적인 억압은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와 이성애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동성애 혐오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곧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동성애 공포증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 유발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는 관련 정보를 차단,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 제도 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 내용 배제 등의 방식을 동원한다. 이는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 전략 즉, 차별의 제도화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0) 성적체성을 원인으로 한 피해 경험

	있다	없다	기타	무응답	계
빈도(명)	126	413	10	12	561
비율(%)	22.5	73.6	1.8	2.1	100.0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없다' 73.6%(413명), '있다' 22.5%(1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성적체성을 원인으로 한 차별 및 피해 내용

	심리 불안정	인간 관계 갈등	조직 불이익	아웃팅	성폭력 피해	금품 갈취	기타	계
빈도(명)	59	67	35	35	16	2	8	222
비율(%)	26.6	30.2	15.8	15.8	7.2	0.9	3.7	100.0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레즈비언 126명 중 124명이 응답하였다. 124명이 1인당 평균 1.8개 항목을 선택, 총 222개 항목에 다중 응답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 및 피해를 경험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가족·친구 등 인간관계 갈등' 30.2%(67명), '심리·정서적 불안정' 26.6%(59명), '아웃팅 위협 및 협박' 15.8%(35명), '학교·회사 등 조직 내 불이익' 15.8%(35명), '성폭력 피해' 7.2%(16명), '금품 갈취 피해' 0.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끼리끼리>에 따르면, 레즈비언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려졌다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족에게 알려졌다면 지속적인 강간을 하는 사례, 직장 동료에 의한 아웃팅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 등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³⁵⁾

(12) 피해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유무

	있다	없다	계
빈도(명)	11	115	126
비율(%)	9.2	90.8	100.0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단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는 '없다' 90.8%(115명), '있다' 9.2%(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115명 중 87명이 응답하였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한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3.3%(29명),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31.0%(27명),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17.2%(15명),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이 두려워서' 12.6%(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 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아웃팅 두려움	기관의 존재 모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혼자 해결 가능	기타	계
빈도(명)	11	15	29	27	5	87
비율(%)	12.6	17.2	33.3	31.0	5.5	100.0

레즈비언임을 이유로 심리 불안정·조직 내 불이익·아웃팅 피해·성폭력 피해·금품 갈취 피해 등을 경험한 레즈비언 10명 중 9명 이상이 타인이나 피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에 노출 된 경험이 있는 레즈비언들은 피해 당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정체성 혼란 시기부터 교제 과정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개인·사회적인 혼란과 고통을 감당하듯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서 역시 혼자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상황에 놓인 레즈비언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그러한 기관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 과정상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범죄의 피해 여성들은 사건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두려워한다. 피해 상황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혼자의 힘으로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해결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 피해 상황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의 문제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레즈비언들에게는 박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금품 갈취 피해, 성폭력 피해, 아웃팅 피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역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물어 버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감추어 사건을 덮어 버리고 마는 현실은 한국 사회 레즈비언들의 참혹한 인권 박탈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0%, 아웃팅 관련 내담이 31%, 성폭력 관련 내담이 19% 정도의 비율이라고 한다(끼리끼리, 2004).

7.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과정

(1) 동성애공포증(homophobia) :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공포증은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의 견고한 틀 속에서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도 내면화된다. 따라서 동성애자 중에도 자신의 동성애공포증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성애공포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³⁶⁾

(2) 내 안의 동성애공포증

(3) 네 안의 동성애공포증

(4) 우리 사회의 동성애공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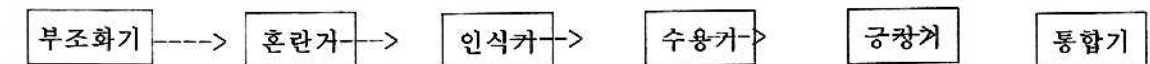
정신의학계/상담계/청소년 동성애자 부정/선택 가능성 배제/차이 경시/정상 이데올로기/이성애중심주의/종교계/교육계/문화

(5) 동성애공포증과 싸움하기

정보 제공/정보 공유/

가부장제->이성애중심주의->레즈비언 억압

(6) 레즈비언 정체성 발달 6단계



1) 부조화 및 혼란 단계

레즈비언 구성 초기 과정에서 레즈비언은 여성으로 향하는 특별한 감정 상태를 '집착', '동경', '우정', '있을 수 없는 이상 감정 상태' 등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내면화 하고 있는 레즈비언 자신에 의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수용된다. 부정적인 방식의 수용은 혼란, 거부 반응, 회피, 자기 비하, 자기혐오, 자기부정 등의 부정적인 전략을 레즈비언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전략의 수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비정상화 하거나 왜곡된 정체성을 정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성된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과 전략의 선택 및 실천은 레즈비언 스스로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정체성 및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자학이나 자살 시도의 욕구를 가지게 한다.

2) 인식 및 수용 단계

레즈비언 정체성은 교제와 이별 등의 구체적인 관계 문제, 부조화 및 혼란 상태의 반복적인 경험 등을 통해

36)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2004),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인식과 수용의 내용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레즈비언 정체성의 긍정적인 인식 및 수용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관한 정보의 접근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에 의해 가능하다.

3) 긍정 및 통합 단계

부조화, 혼란, 인식, 수용의 단계를 거친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련 정보의 접근을 통해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레즈비언 정체성을 긍정하고, 통합했다는 사실이 곧 레즈비언들의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의 문제, 이성애 중심주의, 가족주의, 정상 이데올로기 등은 온존하기 때문이다.

8. 레즈비언 대상범죄

9. 레즈비언 권리

레즈비언 권리 :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설명은 레즈비언의 권리 문제와 무관하다. 천부적인 권리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구체적인 각종 보장 권리들은 애초에 레즈비언에게 무의미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조차도 밀려 나 있던 레즈비언 인권의 문제를 '인권 의제화'하는 노력은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가 담고 있지 못한 영역의 인권 문제를 '인권 의제화' 함으로써 개념을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³⁷⁾

10. <끼리끼리>는 뭘 할래?

- (1) 상담소 개소
- (2) 특별법 제정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적극적 조치

- 1) 혐오범죄 방지법
- 2) 동성간 결혼 합법화

(3) 외딴 섬 그러나...

- 1) 끼리가 외딴 섬인 이유 : 게이들의 가부장성, 여성인권활동가들의 호모포비아와 오만(여연, 강숙자, **여성단체 대표, 레즈비언 섹스의 환상화, 난 레즈비언 바에 다니는 애들이 싫더라, 언니네 자기만의 방...)
- 2)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의 연대/여성인권운동 단체와의 연대/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국제사회기구와의 연대/자문변호인단 구성/경찰 연계

(4) 여성 의제화

- 1) "조국을 생각한다"
- 2) 나르시스트와 레즈비언

37) 박수진(2004),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11. 누구를 위한 시민권/인권인가?

12. "청소년, 유색인종, 무직, 장애인, 여성 그리고 레즈비언" 인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13.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우정이라는 이데올로기/다양한 스펙트럼

※ 참고자료

1. 동성애 관련 용어

[1] 동성애/동성애자

동성애란, 동성의 사람에게 갖는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이끌림을 뜻한다.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이끌림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란, 동성의 사람과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있거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사람을 의미한다.

[2] 동성연애/동성연애자

동성연애란, 동성애를 비하하는 낱말로써 동성애자들이 항상 성접촉을 전제로 한 연애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담겨있는 용어이다.

동성연애자란, 단순히 '동성의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용어가 아니다. 이 역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낱말로써 모든 동성애자들이 교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편견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3] 호모(Homo)

호모란,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라고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한 낱말이다.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 레즈비언(Lesbian)

레즈비언이란, 여성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레즈비언이라는 낱말의 어원은 그리스 최고의 여류시인인 사포(Sappho)가 여성인 하인들과 머물렀던 그리스 에게해 동부에 위치한 섬 '레스보스'에서 유래한 낱말이다.

[5] 게이 (Gay)

게이는, 남성동성애자를 의미한다. Gay는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로써 서구 동성애자 사이에서 동

성애자를 비하한 용어인 '호모'를 대신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여/남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남성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6] 양성애자 (Bisexuality)

양성애자란, 동성인 사람/이성인 사람 모두에게 정서적·정신적·신체적·성적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을 나누고 있거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양성애자라고 정체화 한 사람을 의미한다.

[7] 트랜스 젠더 (Transgender)

트랜스 젠더란,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을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생식기를 가졌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 하는 사람들 혹은 남성의 생식기를 가졌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트랜스 젠더는 모두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자신을 트랜스 젠더라고 정체화 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희망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8] 퀴어 (Queer)

퀴어란,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낱말로써 동성애자를 비롯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소수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9] 이반

이반이란, '퀴어'의 우리나라식 용어으로써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소수자 전체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10] 동성애혐오증(Homophobia)

동성애혐오증이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공포증상·혐오증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핍된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게 갖는 막연한 공포와 혐오를 의미한다. 최근 호주 의학회에서는 동성애혐오증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 커밍아웃(Coming out of the closet)

커밍아웃이란, 스스로를 성적소수자로 정체화 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커밍아웃은 '벽장으로부터 벗어남(Coming out of the closet)'이라는 문장의 약어로, 자신을 부정하고 비하해 온 성적소수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고 그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상태를 가리킨다.

[12] 아웃팅(Outing)

아웃팅이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드러내기인 '커밍아웃'과는 달리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성적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소수자에게 있어 아웃팅은 곧 '생존권 박탈'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아웃팅은 명백한 폭력이며, 범죄이다.

2. 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유서

[윤씨가 남긴 유서 중 일부]

저의 공백을 간직해 주세요. 후에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세가지 소원은 동성애자 해방, 시조부님, 가사 부활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나라가 좋고, 이 세상이 좋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Y신부님 그 작은 동성애자로 '하나님의 자녀' 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한국 동성애자들에게 남기는 말. 인간가는 인간가는 좋은 남 용기예요. 난 이승에서 사는게 싫어서 이땅에 떠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보람되게 사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죽을걸 비난할 사람이 있을거라구 추측 때문입니다. 더러우 보보새의 그걸 잘 죽었다. 말신들, 날 비난하기 전에 이 사회를 먼저 비난하십시오.

아, 좋아하세요. 죽은 뒤에 거렁뱅이가 팔팔하게 팔팔 수 있겠죠. '음OO는 동성애자다' 라고요...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토 인해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내 한 육속 죽어서 동성애자 사이트 유해해해해해 삭제되고 '소통과 모모라' 용수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과 깨달음을 주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나 죽은게 마땅치 않다고 봐요. 돌지각한 편견과 이 사회가 한 사람을 하니 수많은 성적소수자를 남피리지도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도 반성적적이고 반인륜적인지...

우리더러 죄인이라 하의 전에 자기네들이나 먼저 회개하고, 이웃 사람 실권도 해야 할거예요..... 4월 24일 목

출처 : <http://ildaro.com>

3. "당신들의 평범함이 우리에게 폭력이다"



출처 : <http://ildaro.com>

HomePage : www.kirikiri.org

Webzine : www.kirikiri.org/ttose

반성폭력 네트워크 : www.kirikiri.org/network

e-mail : kiri9411@chollian.net

상담/사무 : (02)703-3542~3, Fax : 02-703-3543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제18기 인권학교

강의5. 여성 재소자의 인권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 들어가며

2001년 현재 전국 행형 구금시설³⁸⁾에 수감돼 있는 여성 재소자의 수는 약 3천여명. 전체 재소자가 6만2천여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재소자는 전체 재소자의 약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성 재소자의 수적 열세는 여성 재소자에 대한 '차별'을 불러온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기보다는 수적 열세에 의한 차별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내세우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 하에 별도의 전용시설을 구비하기보다는 일반 구금시설의 일부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여성재소자들은 불가피하게 '인권침해'에 직면하게 된다.³⁹⁾ 이는 수적 열세에 의한 차별로부터 비롯되긴 하지만 여성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으로써 물리적 강제력이 상존하는 교도소의 특수성의 당연한 산물이다.

- 38) 1. 우선 교도소 등에 대한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교도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노역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수형자(受刑者)를 수용하는 (행형(行刑)) 구금시설을 의미하며, 구치소란 형이 확정되기 이전, 즉 수사나 재판과정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감하는 구금시설을 의미한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가리켜 (행형)구금시설이라고 하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형)구금시설을 '감옥'이라고 부른다. 이는 '교도소'라는 명칭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우리의 교도소는 '교정'이나 '교화'의 의미보다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감옥'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 모든 책임을 '범죄자' 개개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교정' '교화'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교도소와 구치소를 구분해 지칭하는 것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감옥'을 교도소 등의 (행형)구금시설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또한 교도소와 구치소 등의 (행형)구금시설을 관할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은 법무부로 행형의 문제를 논할 때 법무부를 '교정당국'(법무부 교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교정당국'이 아닌 '행형당국'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1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감옥이 '교정'이나 '교화'보다는 아직 사람을 가두고 형벌을 집행하는 '행형'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재소자와 수용자, 수형자라는 표현에 대한 혼돈이 존재하는데, 수형자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돼 '형'을 복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에 반해 재소자와 수용자는 수형자를 포함해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거나 수사, 재판중인 상태에서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본 글에서는 재소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 39) 전국 45개의 행형구금시설 중 여성 재소자만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여성 재소자들은 행형구금시설 중 일부의 공간에 격리 수용된다. 여성재소자들이 수감돼 생활하는 공간을 여사(여자사동의 줄임말)라고 부른다.

1. 여성재소자의 인권

1) 법률적 검토

수용자들의 권리장전이라 일컬어지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은,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행형법 역시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금시설 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발생해서는 원칙에 대한 선언이며,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에 대한 법률적 진전은 별로 이뤄지지 못했다. 수감 시 남자 재소자를 여성과 분리 수용할 것, 여자재소자들의 일상적인 처우나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은 여성교도관이 직접 행하거나 반드시 입회할 것 등이 전부이며, 모성적 측면에서 임신부를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거실환경

기본적으로 감옥의 협소함과 열악함은 이미 알려진 바다. 재소자 1인이 평균 0.5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실은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매캐한 냄새와 곰팡이는 어떤 시설이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01~0.3평에 이르는 화장실에서 불일은 물론 세면과 세탁, 나아가 설거지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위생상 '청결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계절의 변화 또한 재소자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전국의 구금시설에 온돌을 설치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거실바닥난방이 채 되지 않은 시설이 존재하며, 시설에 따라서는 온돌공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면 한기에 시달려야 하며, 일부 여성재소자의 경우 냉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거실의 협소함과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을 거실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여성재소자의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화장실 사용이다. 독방이라 불리며 1~2인이 사용하는 거실의 경우 화장실에 따로 문이 설치되지 않은 채 약 50cm 높이의 가리개(차폐막)만 설치돼 있어 용변을 보는 것이 동료수용자는 물론 감시를 하는 교도관에게도 노출되기 때문이다. 앉았을 때 허리 밑까지 오는 가리개를 통해 중요한 신체부위 등은 가릴 수 있지만 용변을 보는 것마저도 노출되어지고 감시되어진다는 사실은 재소자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리개는 교도관들의 재소자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행형당국은 화장실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문을 달아주었을 때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막연한 위험성만으로 재소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사례 1>⁴⁰⁾

의료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 지체1급 장애인이 된 김아무개 씨(43, 여)는 병원 쪽의 턱없이 적은 위자료와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해 병원 현관 앞에서 분신을 기도하려다 연행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송파경찰서에 유치된 뒤 5일 동안, 그는 화장실에 한번도 가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좌변기밖에 쓸 수가 없지만 유치장에는 쭉그려 앉는 변기밖에 없었기 때문. 게다가 유치장 직원이 모두 남자이다 보니 수치스러움에 소변이 마렵다는 말조차 한참을 망설여야 했다. 결국 그녀가 옷에다 소변을 보았고, 그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후 성동구치소로 이감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좌변기가 마련되지 않은 구치소에서 그는 기저귀를 착용해야만 했다. 살이 빨갛게 짓무르기 시작하면서 욕창에 대한 두려움 또한

- 40) 이 사례는 장애를 가진 재소자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에 수감되었을 때 겪게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지되는 것은 이 사례의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또 다른 인권침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커졌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주일 남짓 그녀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으며, 구치소 내에서의 이동은 구치소측이 간신히 마련해준 휠체어 의지해 생활했다. 2월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거실에서 지내던 그녀에게는 추위 역시 공포였다. 혹여 동상이라도 걸리는 날엔 다리를 잘라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를 딱하게 여긴 교도관들이 추위를 막으라고 담요를 가져다주긴 했지만 힘이 없는 그녀의 다리엔 담요조차 버거웠다고 그녀는 말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에 불구속수사가 결정돼 풀려나던 날 그녀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구속되던 날부터 석방되던 날까지 2주 동안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 받아야 했던 수모와 모욕감이, 절망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다.⁴¹⁾

<사례 2>

2002년 4월,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담당 여경은 노조원들의 항의를 ‘절차’라는 이유로 일축했다. 또 한 노조원은 생리 중임을 호소했으나, 이 역시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성노조원들은 “잘못도 없이 경찰서에 잡혀간 것도 기가 찬데, 알몸 수색까지 당해 처음엔 말하기 싫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신체검사는 유치장 입감시부터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모든 구금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이물질들 구금시설 내에 들어왔을 경우 탈주나 도주, 자해 및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 시설에 입소할 때나 시설 밖으로 나갔다 왔을 때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검사는 단순히 몸을 수색하는 범위를 넘어서 절차상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한다. 이는 질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재소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며 모욕적인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 대법원은 “(구금시설에서 행해지는)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재소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이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개인 위생

구금시설의 모든 의류와 침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즉, 본인의 신체사이즈와 무관하게 배급되는 수인복을 착용하게되며, 1인당 일정수량의 침구가 지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복을 제외한 내의와 간단한 면티 등을 자비로 구입해 착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개인별로 모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포와 침구의 세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구금시설 위생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게 하는 대목이다. 의류와 침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세탁이 가능하며, 철마다 관에서 지급되는 침구 등은 해묵은 냄새 함께 누가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에 ‘거리낌’을 갖게 한다.

샤워나 목욕 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역시 재소자들에게 고역이다. 규정상 샤워와 목욕은 1주일에 1회씩으로 제한돼 있으며, 샤워나 목욕을 하는 장소와 이를 행하는 시간 역시 지정돼있다. 거실내 화장실에서 이를 행하는 것은 금지대상이며, 만약 이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교도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재소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생리중이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여성재소자의 경우 이에 대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41) 이 사건이 있은 후 법무부는 서둘러 ‘장애인 전문교도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군산교도소를 장애인 전문수용시설로 지정해 장애인 수형자들만 따로 모아 직업 훈련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생리대는 자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는 여성재소자에게 있어 치약이나 비누처럼 생필품에 속한다. 물론 사회에서도 생리대가 아직은 생필품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의 돈으로 생리대를 구매해야하는 원칙은 여성 재소자의 빈약한 주머니를 약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비로 구매하는 생리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일부 여성들의 경우 생리대로 인한 피부질환과 트러블을 호소해오기도 한다.

4) 운동과 의료 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소자들은 매우 심각한 심정적,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순조로운 구금시설의 생활은 물론 이후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운동과 의료이다.

행형법은 공휴일과 적절하지 않은 기상 여건을 제외하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동은 20~30분 내에서 진행된다. 이는 교도관 인력이 부족하고 운동시설과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다. 특히 여성재소자들은 남성재소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을 하게된다. 수적 열세에 의해 남성재소자들이 큰 공터를 차지해 공을 차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시간을 보내는데(물론 남성재소자들이 운동을 하는 공간역시 그 수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비해 여성재소자들의 경우 작은 화단 혹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몇 바퀴를 도는 것이 전부이다. 준비된 운동기구라고 해봤자 훌라후프나 줄넘기 등이 전부이다.

의료부문에 있어서도 수적 열세는 더욱 큰 ‘차별’을 가져온다. 기본적으로는 남녀 모두 구금시설 입소시와 정기검진 시 제대로 된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수감도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성재소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공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의무실을 남자 사동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남자 사동의 의무실 배치는 여성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난관이다. 즉 진찰을 받으려고 해도 남성재소자와 여성재소자가 부딪히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남성재소자에 대한 진단이 모든 끝난 뒤라야 의무실에 갈 수 있으며,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무관이 아닌 간호사가 먼저 달려온다. 또한 여성재소자의 경우 일반적 진료뿐 아니라 여성질환과 관련한 산부인과 진료가 요구된다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에 따른 부인과 계통의 진료 및 치료 뿐 아니라 모성권리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금시설이 일반 재소자들에 대한 내과, 외과 진료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 산부인과 진료는 ‘사치’에 가깝다. 경우에 따라 산부인과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병원에 나가야만 하는데, 대부분의 구금시설이 외부진료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1~2개월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의료문제는 매우 개선될 부분이 많다.

<사례 3>

“의무관이 너무 형식적이예요. 병명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산부인과 진료는 없구요. 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하는 것은 혈압정도만 해요. < 교도소는 그냥 방 하나에 소독약정도 있어요. 전에 있었던 데는 그래도 책상에다 침대도 있고 그랬는데... 매일 한번씩 진료하고 여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꽤 큰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100~120명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왔어요”(안00 씨, 95~98년까지 복역)

“정기검진이나 산부인과 진료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4년 있으면서 감기 때문에 몇 번 진료한 것 말고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김00씨, 83~95년까지 복역)

“몇번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간호사만 들여다봤어요. 간호사는 상태를 보고 의사선생님에게 얘기했는지 다음날 약을 타다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건 몇 차례 고통을 호소한 뒤 결국 쓰러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의무과에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구요. 그전에 의무과가 남자 사동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도 가기 어려웠고, 교도관들도 귀찮아했거든요.”(설00 씨, 2000~2002년까지 복역)

5) 임신과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저기준 규정에 의하면 여성구금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금시설에는 임신부가 시설 내에서 산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외부진료 허가를 받아 외부병원을 이용해야만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0곳의 구금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가 41.7%, 임신기간 중 병방(병실방)에 수용되지 못한 경우도 47.8%에 달했다고 한다. 더구나 유아전용거실이나 유아놀이시설은 한군데도 없었다. 행정법에 따르면 구금시설 내 출산 시 1년 6개월까지 시설에서 유아를 대동할 수 있는데, 산모의 경우 아이의 목욕이나 유아용품의 소독 등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아이가 아플 경우 엄마 때문에 아기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⁴²⁾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예산으로 인해 구금시설 내의 일상적인 상비약을 구비하고 지급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조건이며, 또한 미흡한 의료시설의 조건에서 여성재소자에 대한 산부인과적 검진과 임신 및 출산자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으나 의료권보장과 임신, 출산 등은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재소자의 특성에 따른 진료의 내용 및 시설의 구비는 매우 정당한 요구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일 수밖에 없다.⁴³⁾

6) 직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작업 등

여성재소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처우는 직업훈련과 교육, 그리고 작업이다. 여성재소자의 경우 귀휴나 사회견학, 응변대회 등이 남성재소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시행되고 있으며⁴⁴⁾, 여성재소자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재소자가 있어도 교육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형을 확정받은 수형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과되는데, 여성재소자들이 주로하는 작업은 직원식당의 취사와 사동 청소, 미싱, 봉재 등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전통적 여성관에 부합하는 내용들일 뿐, 이들의 사회진출 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재소자들을 교도관들을 위한 식당 취사부에서 작업을 시키기 위해 전국에 있는 구금시설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작업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들의 노동력을 국가가 착취하고, 기본적으로 여성재소자의 처우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에 비해 수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또한 전통적 여성관을 이유로 여성재소자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적합한 작업의 내용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일이다. 특히 구속과 복역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을 이미 상실했거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등을 위해 일자리를 사실히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42)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소자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소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그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매우 높은 의료부담을 지게 된다.

43)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19p, 국가인권위 발간

44) 여성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58p.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글을 마치며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여성재소자의 문제는 '여성 재소자'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에 던져지지 못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감옥 현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즉, 감옥 환경의 열악함과 물리력의 사용이 용인되는 공간이다보니 인권침해가 '남녀노소'와 '지위계층'을 불문하고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수자' 혹은 '개별적' 사안 보다는 '감옥'자체의 폭력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이 직면했던 현실과 상황에 대해 항구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성재소자들의 수가 많이 많아져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일년에 접하게되는 몇백건의 상담 중에서 여성재소자들의 상담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적으며, 이 상담역시 본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남성의 경우 전과가 있는 것이 하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용인될 수 있는 한때의 실수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건 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라는 편견과 냉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인되어질 수 없으며, 그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미명 하에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구금시설에서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결코 '특혜'를 제공하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남성재소자와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적당한 처우와 환경,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부터 감옥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고야 한다는 것이다.

제18기 인권학교

강의6. 성매매 여성의 인권

배 금 자 (변호사)

I. 군산 대명동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실상과 최초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경위

1.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사건

2000. 9. 19. 09: 15 경 군산시 대명동 138-18 소재 3층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쇠창살로 막힌 1. 5평 쪽방에 감금되어 있던 여성 5명이 질식사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인신매매와 감금 등의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 단체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단순한 '실화사망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이곳은 군산시내 한복판, 파출소를 100미터 앞에 둔 사창가 지역으로 인신매매, 감금, 윤락강요와 착취의 범죄가 수십년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범죄소굴인데도 경찰은 이곳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관할 파출소장과 부소장이 이 지역 사창가 포주들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사실, 군산경찰서와 군산시에서도 이 사창가 업소를 현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수십차례 합동단속계획을 세웠으면서 문서상으로만 작성해놓고 실제 기습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등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의 실태가 낱알이 드러났다.

이곳의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이곳에 끌려와서 철저한 감금상황에서 하루 5-20명까지 남자를 상대로 윤락을 강요당했으며, 포주들은 그 화대를 100% 착취했으며, 성노예 여성 한 명당 포주가 취득하는 불법소득은 월 1000만원대에 달했다. 이 업소의 경우 화재당시 6명을 감금시켜 놓았는데 월 6천만원의 불법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었다.

이곳은 인간을 돈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아 넘기는 곳, 인간을 쇠창살과 철문, 감시원으로 24시간 감금하는 곳, 인간을 1.5평 쪽방에 짐승같이 가두어놓고 하루 5-20명까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강요해서 화대를 전부 포주들이 착취하는 인간착취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극악한 범죄의 소굴이었는데도, 국가 공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는 '치외법권'과 같이 두텁게 보호되고 있었던 것이다.

2. 국가배상책임 추궁경위

여성들이 이곳에 인신매매로 끌려와 쇠창살로 막힌 1.5평 쪽방안에 감금되어 매일 끔찍한 윤락강요를 당하며 인간착취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성들을 구출해주고 포주들을 체포하고, 업소를 폐쇄할 책임이 있는 국가 및 군산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여성들은 화재로 감금상태에서 사망이 막힌 1.5평 쪽방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이건 업소 포주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공권력이 포주와 결탁하여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방치한 직무유기의 극치로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공권력의 잘못된 관행을 깨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사 상태에 있는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도우는 한편, 우리나라를 인권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망한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을 대리하여 포주들과 대한민국, 군산시를 공동피고로 하여, 200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0 가합 79417).

3. 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와 감금사망 경위

이 사건 군산시 대명동 138-18 소재 윤락업소는 군산시에서 수십년전부터 형성된 '쉬파리골목' 윤락업소로 널리 알려진 윤락가 골목입구에 위치한 첫 번째 건물이다. 이 업소는 역전파출소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져 있고 군산경찰서에서 살살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 업소의 포주들은 부부, 장모, 처남 등 일가족이 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난 이건 대명동 138-18 번지 업소는 1999. 5. 경부터 했고, 그전에는 바로 이 업소 옆의 군산시 대명동 138-107번지에서 십년이상 윤락업을 해온 포주가족이다. 사위 포주 이모는 1990년경부터 포주 박모와 동거하면서 포주 박모 가족이 하는 138-107 번지 업소에서 공동포주가 되었다. 이곳에서도 이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로 여성들을 감금시켜 윤락강요를 하는 범죄행위를 10년간 계속해왔는데도, 한번도 단속이 되지 않다가 도망간 미성년자 임승희를 도로 잡아와서 감금시킨 건으로 1999. 5. 경 사위 포주 이모만이 입건된 것이 처음이다.

군산경찰서가 당시 포주 이모를 입건한 형사기록에 의하면, 이건 업소로 옮겨오기 이전에 바로 옆인 군산시 대명동 138-107번지에서 1.5평 쪽방 5개를 만들어 1997. 10. 초순부터 1999. 5. 22. 까지 여성 6명을 감금시켜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착취를 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포주가족은 대명동 138-107번지에서 십년간 동일범죄를 했는데도 범죄사실에서는 2년으로 축소했다. 포주 이모가 1999. 5. 23. 구속되자 부인 박모 등 포주가족들은 바로 옆에 있는 이건 대명동 138-18번지로 업소를 이전했다.

포주들은 이건 대명동 138-18번지 건물로 옮겨서 2층과 3층에 칸을 막아 1평 남짓 쪽방을 여러개 설치하고, 2층과 3층의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을 설치하고, 건물외부 출입문을 봉쇄하고, 건물 내부 1층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감금시설을 하여 전 업소에 있던 여성을 이곳으로 옮겼다. 경찰은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 그리고 인신매매로 여성들을 추가로 넘겨받아 이곳에 다시 감금시켰다. 화재시 사망한 망 권양은 2000. 4. 25. 군산시 개복동 소재 '황금마차' 유흥주점 주인 전모로부터 금 2,900만원에 인신매매로 넘겨졌고, 망 임양과 김양은 2000. 8.12. 군산시 개복동 소재 '왕과비' 유흥주점 주인 송모, 김모로부터 각 1080만원과 1100만원에 인신매매로 넘겨졌다.

포주들이 여성들을 감금한 방법은 2층 쪽방의 창문쪽에 굵은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창문에 커튼을 쳐서 창문틀에 부착해서 외부와 차단하였으며, 건물밖으로 통하는 계단입구의 철제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안에는 판자로 봉쇄하고) 2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그 대신 건물안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을 새로 만들어서 1층에 있는 위 내부계단 입구에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고, 1층 쪽에서 위 출입문을 잠그게끔 시정장치를 하고, 동 피고들은 1층에서 상주하면서 여성들을 감시하고, 여성들이 2층에서 잠을 자는 동안 위 출입문을 1층에서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을 하였다.

포주들이 이건 업소에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넘겨받아 한평 남짓 쪽방안에 감금시켜 사방을 쇠창살과 철문을 봉쇄하여 짐승같이 가두어놓고, 감금한 여성에게 하루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에 이르기까지 남자를 상대로 유희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 100%를 전부 가로채서 착취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매일 현행범으로서 군산시에 한복판, 그것도 역전파출소 목전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곳에는 국가공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들은 전혀 구조되지 못하고 계속 감금되어 성노예 생활을 당하여 오다가 2000. 9. 19. 09:15 경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시 탈출도 못하고 감금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소방관이 진입한 후 확인된 당시 이건 건물의 상황은 창문은 굵은 쇠창살로 박혀있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 수 없으며 커튼을 벽에 봉해서 열 수조차 없고 밖에 구조요청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되어 있고, 이 건물의 외부로 통하는 바깥 출입문은 철문을 설치하여 밖에 자물통을 항상 채워서 출입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상시 막아놓았고, 이건 건물의 유일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계단에 피고들이 불법개조를 하여 만든 출입문이 유일한 것인데, 그 출입문은 1층에 상주하는 피고들이 1층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영업이 끝난 후 2층의 여성들이 밖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도록 1층에서 포주들이 잠가버려서 여성들은 1. 5평 쪽방에 완전히 감금당해 있었다. 1층에 있던 포주들은 화재시 2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서 여성을 구조하지 않고 감금상태로 두고 전부 달아나고 없었다.

이와 같은 감금상태였기 때문에 화재당시 출동한 소방관도 바로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는 이건 건물의 2, 3층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이건 건물의 외부로 통하는 계단의 철제문의 열쇠통을 절단기로 부수고, 이건 건물의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포크레인으로 여러번 밀어서 간신히 창문과 함께 밀어냄으로써 진입이 가능했다. 3층에 있던 김양은 유일하게 구출되었으나, 이미 2층의 여성들은 구조가 늦어 전원 1.5평 쪽방 안에 갇힌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망 김양은 방구석에 쪼그린 상태로 천조각을 얼굴에 대고 있는 상태로 사망했는데, 포주 박모는 이에 대해 "평소 문이 잠겨있어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자신이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4. 군산경찰서 및 관할 역전파출소의 직무유기 실상

가. 계속된 동일 범행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한 군산경찰서

이 업소 실제 공동포주 이모는 "김제칼잡이"로 통하는 폭력, 인신매매 등 전과 11범 폭력배로서 1980년경부터 군산시 대명동에서 '물망초'라는 유희업소를 직접 경영했으며, 이 업소를 경영할 때 여성을 인신매매로 끌고와 감금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여성을 감금해서 유희강요를 해 화대를 착취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 업소의 포주들인 일가족은 이건 업소로 옮기기 전에는 역시 '쉬파리골목'안의 사창가인 바로 이 업소 옆의 군산시 대명동 138-107번지에서 십년이상 유희업을 해온 포주가족으로서, 대명동 138-107번지를 포주 전모 이름으로 1996. 7. 8. 취득하였다. 포주 이모는 1990년경부터 포주 박모와 함께 동거하며 138-107번지 업소에서 유희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로 여성들을 감금시켜 유희강요를 하는 범죄행위를 10년간 계속해오는 동안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다가, 도망간 미성년자 임승희를 도로 잡아와서 감금시킨 것으로 입건되었다.

위 업소에서 동 피고들이 10여년간 계속해서 저지른 범죄행위와 군산경찰서의 직무유기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 업소에 감금되어 유희강요 생활을 하던 임모양이 98. 4. 5. 업소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98. 10. 사위 포주 이모는 호남선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임양을 붙잡아가서 도로 감금하고,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협박해 왔다. 위와 같이 도망간 여성을 6개월만에 도로 붙잡아 올 수 있는 포주들의 조직망도 무서울 정도이고, 사람을 백주 노상에서 납치하여 가서 도로 감금을 시킨 일이 발생해도 경찰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업소였고, 임양이 납치되어 이곳에 다시 감금되어 7개월이나 더 유희강요를 받는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도 군산경찰서와 목전의 역전파출소는 도대체 이 업소를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가자 그때서야 1999. 5. 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특경대에서 이곳 업소를 들이닥쳐 포주 이모를 10년 영업기간 동안 처음으로 입건하였다.

군산경찰서는 이 당시 포주 이모만 구속하고, 공동포주로 밝혀진 처인 포주 박모는 전혀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으며, 이 업소에서 같이 불법행위를 하는 포주 일가족들도 전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임양의 진술에서 '주인 박모'라고 수없이 진술하고 있는데도 포주 박모를 입건하지 않았다. 포주 이모에 대한 판결문에도, "처인 공소외 박모와 공동하여 1999. 5. 22.부터 피고인 경영의 유희업소에서 도망간 피해자를 끌고 온 후 유희행위를 시키고 박모와 번갈아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고 되어 있는데(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됨)도 군산경찰서는 피고 박모를 지명수배 선상에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옆건물로 옮겨서 똑같은 범죄행위를 계속하도록 방치하였다.

포주 이모는 위 사건에서 곧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포주 박모등과 함께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업소(대명동 138-18)로 옮겨 쇠창살과 건물봉쇄로 감금시설을 하고 여성들을 옮겨 감금시켜 전과 같은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군산경찰서는 흰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이건 화재로 여성들이 모두 떼죽음을 당할 때까지 이 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군산경찰서가 유희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이 전혀 없고, 인간착취 범죄행위를 범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나. 화재참사사건 후 포주들에 대한 군산경찰서의 태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의 실제포주로 지목되는 이모와 공동포주 박모 부부를 사건 발생 후 한달 동안 구속하지 않았다(포주 이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경찰은 포주 이모의 집에 가서 포주가족들이 결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포주 이모를 체포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었으며, 이 덕분에 공동포주 이모와 박모는 한달 간이나 도주를 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건 대명동 업소에서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할 업주장부를 확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중요한 증거물인 감금당한 피해여성들의 일기장과 장부도 경찰은 진작 수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버려 유족들과 여성단체 사람들이 수거해올 정도로 수사를 소홀히 했다.

군산경찰서 형사계 소속 차모는 이건 화재가 발생하여 쉬파리골목의 대표로서 경찰들에게 상납역할을 담당했던 전모(피신중에 있는 범인)와 수차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 대명동 138-18 번지에서 화재참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포주 이모에 대해서는 공동포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끝내 포주 이모를 '포주'로서 입건하지 않고 방치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포주 이모는 이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군산지청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음이 통화기록에서 나왔다.

포주 이모가 실제 이 업소의 공동포주라는 사실은 이 업소와 같은 지역의 사창가 운영자, 이건 업소 주변 가게 주인들과 주민들, 이 업소에 피해자들을 인신매매로 넘긴 개복동 유흥주점 업주들의 진술, 이건 업소의 유일한 생존자 김모씨의 진술 등에서도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2000. 9. 22. 군산경찰서 형사계장은 유족들에게 이 업소의 실제주인은 이모로 말한 사실이 있고, 2000. 9. 20. JTV가 방영한 인터뷰에서, 군산경찰서 경찰관도 업주가 "실제 이 모씨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도 군산경찰서는 이건 화재 당일(9. 19.) 이모의 집에 갔으면서도, 포주 이모는 체포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 형사계장이 9. 22. 유족들에게 "이모가 실제 포주다"고 말을 하여놓고도, 다음날인 9. 23. 포주 이모의 집에 영업장부와 통장을 압수수색하러 가서 포주 이모를 참여시킨 가운데 수색을 하였으면서도, 포주 이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 피해여성을 인신매매한 업소 관계자가 검사를 찾아가서 이건 대명동 138-18 번지 업소 실제 포주가 이모라고 진술했어도 포주 이모는 이사건 공동포주로 입건되지 않았다.

다. 문서상으로만 요란한 단속계획서 작성과 포주들과의 관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군산경찰서의 내무 문건에 의하면,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대명동사창가 위치도"까지 작성하여, 이건 '쉬파리골목'의 대명동 7개업소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이건 업소는 "사6, 사7번 업소"로 표시). 또한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 업소에 대해 2000. 9. 19. 화재시 감금상태로 여성들이 사망하기까지 2000년도 한해만도 수십 차례의 시경합동 단속계획을 문건으로 세웠으면서도 실제 문건에 기록된 대로 기습단속을 실시하여 포주들을 검거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산경찰서는 2000. 1. 20. 군산경찰서 4층 강당에, 이 사건 '쉬파리골목' 대명동 윤락업소 업주 7명을 비롯하여, 관할구역인 역전파출소장, 군산시청 위생계 공무원 등 관련자 77명을 초청하여, 업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군산경찰서는 포주들을 향해 단속대상지역으로 이건 '쉬파리골목'의 대명동 7개 윤락

업소가 포함되고, 단속유형은 '인신매매, 접대부 등 상대 갈취, 폭력, 학대'가 될 것이며, 단속방법은 '집중투망식, 반복적 단속'과 '최대한 동원 불시기습단속'으로 불법업소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고,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불법영업 대상업소 특별관리(특별순찰실시)'를 실시하겠다고 공적으로 표명하였다. 단속유형에 윤락업소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접대부 등 상대 갈취, 폭력,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그 당시 참석한 포주들로부터(이사건 대명동 7개업소 주인으로부터도) 각서를 받았다. 대명동 윤락가의 포주대표로 역전파출소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전모, 이 사건 업소의 공동포주들을 비롯하여 이건 쉬파리골목의 대명동 7개 윤락업소의 포주들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항상 문을 잠그지 않고 커텐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각서는 말하자면 항상 문이 잠겨져있었고 커텐으로 창문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각서를 제출한 포주도 이 각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각서를 받은 군산경찰서도 이 각서에 따른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인신매매와 감금, 윤락강요, 착취를 하는 흉악한 현행법 범죄자들을 경찰서에 초청(?)까지 해서, "앞으로 기습단속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경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군산경찰서가 진실로 윤락여성의 인권유린 범죄를 단속하여 포주를 처벌하고 불법업소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포주들을 경찰서안으로 초청까지해서 앞으로 단속하겠다고 미리 알려줄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이 업소에 기습단속하면 되는 것이다.

군산경찰서는 이렇게 단속계획을 범죄자들을 경찰서 안마당에 초청까지 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후에도 이건 사건이 발생하던 바로 그해(2000년도)에 수십차례 단속계획을 세웠으면서도 단 한번도 이건 업소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는 제1단계 단속기간: 2000. 2. 21.-4. 13., 제2단계 단속기간: 2000. 4. 14.-5. 31.로 정하고, 이건 대명동 사창가를 중점단속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불시특별단속, 동원인원 21명을 동원할 것이고, 단속대상은 '인신매매행위, 윤락행위'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군산경찰서는 실제 이 단속기간에 이건 대명동 윤락업소에 전혀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인신매매행위'를 중점단속대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이 기간인 2000. 4. 25. 이건 업소 포주 이모가 피해자 망 권양을 개복동 업소에서 인신매매로 이건 업소에 끌고와 감금시켜서 윤락강요를 하며 버젓하게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위 2단계 단속기간(4. 14.-5. 31.)동안에도, 여성들은 매일 윤락을 한 기록이 여성들의 장부기록에서 나온다. 경찰서가 '인신매매'와 '윤락'을 단속하겠다고 2단계 집중단속계획을 세운 이 기간에도 이와 같이 이 업소에서는 버젓이 인신매매와 윤락이 계속 행해졌다.

군산경찰서는 위 1차 집중단속기간(2000.2.21-4.13)에 군산시와 함께 이건 대명동 윤락업소등에 대해 시경합동단속계획을 2000. 2. 25., 같은해 3. 3., 같은달 17. 같은달 30. 같은해 4. 6., 같은달 21, 같은달 25. 등 7차례나 세웠으면서 실제로는 한번도 이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는 위 2차 집중단속기간(2000. 4. 14.-5.31.)에, "일부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어 이를 적극 단속하고 인신매매등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 일제단속"하겠다고 하고, 2000. 5. 3. 이건 대명동 윤락업소를 일제단속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점단속대상으로 '인신매매행위, 유흥접객원 상대 갈취, 폭력, 감금행위, 윤락행위'를 정하고, 단속대상인 대명동 사창가 업소의 "사6,7번"에 해당하는 이건 업소에 대한 근무자는 군산경찰서 경장 최대중, 군산시 공무원은 김요성을 지정하여 2000. 5.3. 자 기습단속을 하겠다고 계획해놓고는 실제 이건 대명동 업소에 전혀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는 2000. 5. 23., 같은해 6. 20, 같은해 7. 7. 같은달 14에도 이건 대명동 율락업소를 단속대상으로 포함하여 '윤락행위, 인신매매등' 합동단속에 관한 계획을 실시하였으면서도 실제 이건 대명동 업소에 는 전혀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는 위와같이 1, 2단계 집중단속기간 설정, 중간중간에 시경합동의 기습단속계획을 수습차레에 걸쳐 세웠으면, 인신매매, 감금,윤락강요와 같은 강력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을 여러명 동원하고, 무장한 상태로 기습적으로 업소에 들어와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습차레 단속계획에서 주된 단속대상으로 삼은 대명동 쉬파리골목 사창가는 실제 한번도 단속이 된 사실이 없다.

군산경찰서는 단속기간 : 2000. 5. 3.-7. 10., 단속대상 : 대명동 쉬파리골목 7개업소, 단속목적 : 인신매매 및 감금여부의 단속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이 남긴 장부에 의하면 위 단속기간동안 여성들은 단지 3-4일만 윤락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기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윤락이 행해진 것이 장부에 나온다. 군산경찰서는 이기간에도 역시 이건 대명동 율락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것이다.

이 사건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지역의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업소의 2층에 설치된 쇠창살은 밖에서도 여성들을 감금하는 '감금창'으로 쉽게 알 수 있고, 이 지역사람들 대부분이 이 업소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건 업소 2, 3층 창문마다 설치된 감금창은 밖에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창문 밖에 설치하는 일반 방법창과 달리, 이건 감금창은 창문안쪽으로 쇠창살을 설치하고 바깥으로 창문을 설치하여, 우선 안에서 여성들이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밖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방안에 있는 사람을 가두어두는 감금창임이 명백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군산경찰서는 대명동 율락업소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를 받았으면서, 정작 이건 업소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이 되는 감금창과 계단의 입구 철제문을 굵은 자물쇠로 봉쇄하고, 이건 업소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새로운 철문을 만들어 1층에서 밖으로 잠금장치를 하여 2층 여성을 감금하도록 되어 있는 명백한 감금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산경찰서는 내부공문에서 '일부업소에서 여성 감금과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재하고, 율락업소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극심하여 군산경찰서가 집중 단속대상으로 삼을 곳으로 이건 대명동 쉬파리골목의 업소를 지적했으며(대명동 율락업소는 3종 중에서도 인신매매와 감금이 극심한 섬으로 팔려가는 마지막 종착지로 알려진 곳), 불시기습단속을 하겠다고 서류상 단속계획은 요란하게 세워놓고 실제 내부의 불시단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가 여성들한테서 받았다는 설문지 중에 이건 업소에서 감금상태에서 화재시 사망한 소외 망 임양과 김양이 작성한 설문서가 있는데, 그 설문서 답변에는 한결같이 "감금당하지 않았고, 윤락강요를 당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른 것임은 이건 사고로 인한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나와있다. 인신매매 되어 왔고, 쇠창살과 철문으로 사방이 감금상태에서 1. 5평 쪽방안에서 매일 윤락을 강요당하며 100% 착취당하는 극심한 인권유린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망 임양이 사망 후 남긴 일기장 내용 곳곳에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포주들이 항생제 주사까지 놓아가며 윤락을 강요하는 상황과 철창속에 감금되어 있고 새가 되어 벗어나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으며,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던 피해 여성들한테서 군산경찰서가 한 것은, 설문지를 범죄일당 포주들에게 나누어주어 포주들을 통해서 이 여성들한테서 '감금당하지 않고 윤락강요를 당하지 않는다'는 설문지를 받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누구 편이였는가는 이 사실만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역전파출소장과 부소장의 뇌물수수

이건 화재발생 당시 역전파출소장이었던 강모는 이지역 담당을 맡으면서 이건 화재사건 이전인 1999. 9. 하순경 이건 대명동 율락7개업소의 대표 전모한테서 영업목인대가로 이지역 포주들한테서 거둔 금150만원을 '파출소 화장실'에서 뇌물을 받았고, 2000. 2. 4. 위 전모로부터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지역 포주들한테서 거둔 금200만원을 '파출소 화장실 통로'에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쉬파리골목'의 7개 업소 불법영업사실을 잘 알면서 전모등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윤락영업을 묵인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처벌받았다.

이건 화재발생당시 역전파출소 부소장이었던 전모는 이건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전인 2000. 9. 11. 에 쉬파리골목 율락가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포주대표 전모로부터 윤락영업의 묵인대가로 포주들로부터 거둔 현금 200만원을 뇌물수수한 것으로 처벌받았다.

마. 성상남 폭로와 증인들의 잠적

이건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군산 개북동의 율락업소의 여종업원들이 고위직 경찰관을 비롯하여 여러 경찰관에게 성상남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자진 나오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성상남 사실을 증언할 증인 3명과 이건 업소의 유일한 생존자 김모양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00. 9. 6. 증인신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증인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전혀 다른 곳에 있고 서로 알지 못하는 이 사건 업소의 3층의 유일한 생존자와 성상남 증인들이 함께 잠적해버린 사건은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다. 성상남 여성들의 진술서 내용에서 나오는 개북동 지역 율락업소의 쇠창살, 감금, 감시, 착취 상황은, 금년 봄에 발생한 개북동 화재사건에서 조금의 과장이 없는 진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2002. 1. 29. 군산 대명동 인근의 개북동 율락업소 '대가'에서 유사한 화재참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즉 감금상태에서 여성 1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개북동의 이 업소는 바로 성상남을 폭로한 천상봉 업소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다. 이 업소 여성들도 이중 삼중의 특수잠금장치로 차단된 감금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 업소는 군산 대명동의 이건 업소와 1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건 대명동의 율락업소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있고 1평 남짓 쪽방에 감금되어 개북동 율락업소에 비해 감금상태가 훨씬 심각했다.

개북동 지역의 율락업소는 대부분 화재가 난 '대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개북동 업소에 있던 여성들은 업주가 여성들이 술매상고를 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명동 쉬파리골목 사창가에 인신매매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 대명동 업소에서 사망한 피해자 망 권양, 김양, 임양은 이곳 개북동 율락업소 '황금마차', '왕과비' 업소에 있다가 업주에 의해 강제로 인신매매되어 이건 대명동 율락업소로 넘겨졌던 것이다.

5. 군산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실상

가. 시경합동단속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군산시 공무원

군산시는 이건 '쉬파리골목'을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군산시조례 396호에 의해 1999. 11. 19.자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윤락가에 대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이는 법규에 근거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 사건 화재건물의 담벼락(건물 1층 유리관 바로 옆)에 군산시장 명의로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일명: 레드존) 팻말을 부착해놓았다.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함께 이건 대명동 윤락업소에 대한 시경합동단속계획을 11차례나 세웠고, 군산경찰서로부터 이건 대명동업소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업소의 실태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다. 앞에서 실시한 2000. 1. 20. 군산경찰서가 주최하여 쉬파리 골목 윤락업주 7명을 비롯한 군산지역 대표적인 윤락업소 업주 77명 등을 초청하여 단속계획을 알려준 "유혹업소업주회의"를 개최할 때, 군산시 공무원도 참석하였다.

군산시가 이건 쉬파리골목 윤락업소에 대해 군산경찰서와 합동단속계획에 들어간 것은 11차례인데, 2000. 3. 3. 자, 2000. 3. 17자, 2000. 3. 30.자, 2000. 4. 6.자, 2000. 4. 21. 자, 2000. 4. 25. 자, 2000. 5. 3. 자, 2000. 5. 23. 자, 2000. 6. 20.자, 2000. 7. 7. 자, 2000. 7. 14. 자 단속계획이 문건으로 요란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군산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문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 군산시 자체단속계획을 수립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군산시 공무원

군산시는 이건 청소년출입금지구역(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군산시장 명의로 청소년출입금지구역 팻말까지 부착해놓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2000. 8. 1.-8. 31(1개월간)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 "현지방문 계도"를 하고 이건 대명동 사창가 입구의 2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현지 방문은 커녕 현수막 게첨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수막 제작비용을 횡령하고는 게첨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과(2000. 8. 1. 이전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2000. 2월 "청소년보호추진계획" 세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 쉬파리골목에 대해 "상시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다는 하였다. 그러나 복지과 공무원들은 문건으로만 만들어놓고 전혀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과는 2000년 3월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추진계획"을 세워, 성매매밀집지역으로 "군산역부근-대명동일원(구시장안)"-바로 이건업소 위치한 곳임)으로 기재하고, 주요단속내용으로 "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를 포함했고, 경찰서와 군산시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복지과 공무원들은 문건만 만들어놓고 이 계획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실태파악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군산시 여성복지상담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가 이 법에 따라 배치한 여성복지상담원은 김모씨(지방별정6급) 한명 뿐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해진 여성복지상담원의 직무는,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 상담",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요보호자의 실태파악"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락여성에 대한 "실태파악"의 의미는 단순하게 윤락업소에 여성이 몇 명이 있는지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어떤 경위로 그 업소에 오게 되었고, 어떤 상태로 그 업소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을 여성복지상담원 자신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실제 윤락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실태파악'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다. 군산시 여성복지상담원은 윤락업소 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끝에 여성들의 실태가 인신매매로 왔고, 감금 등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찰에 알려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포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고, 상담원은 여성들을 업소에서 꺼내와서 보호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발생 후 전북도경은 군산시 여성복지상담원 김모씨에 대하여, "김모씨는 군산시청 여성복지관 부녀상담 담당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산시조례등 관계법령에 의거 군산시청관내 윤락가를 실태조사하여 요보호여성의 신상면담, 선도보호 및 방문상담, 귀가조치등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업무를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11. 8.부터 2000. 11. 3.현재까지 군산시청 여성복지관 부녀상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시 대명동 138-18 번지 소재 속칭 "쉬파리" 골목에 윤락녀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윤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당연히 요보호여성인 쉬파리 골목의 윤락녀를 상대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나 신상면담을 하여 선도, 직업알선, 귀가 조치하는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등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를 위배하여 같은시 대명동 소재 속칭 "쉬파리" 윤락촌 요보호여성의 실태조사나 신상면담 하여 선도예방, 귀가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수사결론을 내렸다.

여성복지상담원 김모는 고의적으로 이 지역만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김씨는 1999. 7. 12. -같은해 8. 31. 까지 2개월간 군산시 중3가, 개북동 유혹주정밀집지역의 종사자여성을 대상으로 "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고, 위 지역 업소를 방문해서 "요보호여성실태조사결과보고"를 군산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김씨가 단속을 나간 중3가, 개북동 유혹지점(이곳은 유혹업 허가를 받아 실제 윤락을 하는 곳)의 실태보다 이건 쉬파리골목의 윤락업소(이곳은 아무런 허가없이 완전히 윤락만을 하는 불법업소)에 감금된 망인들의 상태가 훨씬 심각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김씨는 상태가 덜 심한 업소는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이건 쉬파리 업소는 단속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6. 경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추궁한 법적근거

이 사건 군산시 대명동 138-18 소재 윤락업소에서 포주들이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형법상 인신매매 및 매매수수(형법 제288조 및 292조), 감금(형법제276조),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및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등의 현행법들이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자유가 박탈당하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중대하고 위험한 상태에 장기간 놓여있었다. 철저한 감금구조에서 24시간 감시당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탈출하여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공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개입해야만 이 여성들이 구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해 범죄 진압을 할 구체적 직무와 사회일반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직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 제10조).

현행법은 영장없이 체포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1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사법경찰관은 현행법으로 체포하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여 체포하든, 영장없이 즉시 범죄가 일어나는 건물안에 들어가서 주거수색과 장부 등 증거물의 압수, 검증을 할 강제처분의 권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형법 제122조).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 범죄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1차적인 의무와 국가공권력을 사용할 권한은 경찰에 주어져 있으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직무이다. 이 사건 대명동 윤락업소의 피해여성들의 경우 감금당한 상태로 매일 윤락을 강요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어 생명, 신체의 침해가 절박하고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알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관들은 ‘즉각 개입’하여 범죄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구출할 긴급한 직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고, 저항을 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현행법 또는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자로서 즉각 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의 쇠창살, 철문과 잠금장치 등 감금시설과 윤락여성의 감금실태, 화대착취를 하는 장부 등 증거물을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검증하여 압수 수색을 할 강제처분권한이 있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이러한 권한 행사를 반드시 해야 할 직무가 있으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은 전혀 없다.

범죄진압과 피해자 구출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막강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범죄장소를 관할하고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찰관들이 그러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찰관들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일반 시민이 이러한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전혀 구출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법과 경찰이 있으나 마나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마음놓고 활개치며 하게 된다.

이 사건 대명동 윤락업소에서 소외 망인들이 감금되어 윤락강요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군산경찰서와 역전파출소 경찰공무원들은 알았으므로, 이 경우 소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가 절박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강력범죄행위가 현행법으로서 계속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관들은 ‘즉각 개입’하여 범죄를 진압하고 피해자를 구출할 ‘행동규범’으로서의 직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러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소외 망인들은 인신매매, 감금, 윤락강요, 화대착취의 상태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장기간 포주들의 손아귀 속에서 극심한 인권유린을 계속 당해야 했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소외 망인들에게 올 결과발생의 개연성, 경찰에게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의 직무유기와 소외 망인들이 이 업소에 감금되어 착취당한 상태에 장기간 놓여짐으로써 입게 된 피해, 감금된 상태를 알면서 방치해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7. 포주들이 착취한 ‘화대’ 규모

포주들이 소외 망인들을 감금시켜 윤락강요를 해서 화대를 착취해 온 규모를 확인할 가장 믿을만한 자료는 망 권양이 남긴 장부와 3층의 생존자 김양이 작성한 남긴 장부였는데, 화대 규모가 여성 한명당 월평균 700-1000만원 상단에 달하였다.

포주들은 화대의 100%를 착취했는데, 착취명목은 1.5평의 쪽방 방값으로 70만원, 밥값, 옷값, 화장품대 등 각종명목과 심지어 여성들을 감금시킨 쇠창살등 시설비와 윤락을 강요하면서 제공하는 콘돔과 의료비까지 여성들의 부채로 공제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넘겨받으면서 전업소에 지불한 인신매매대가까지도 여성들이 포주들에게 갚아야 할 빚으로 공제했다. 여성들에게는 돈 한푼을 주지 않고 이와같은 방법으로 화대를 100% 포주가 받아서 가로챘었다. 3층의 생존자 김양의 경우에는 빚을 다 갚았는데도 포주가 저축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화대를 계속 가로챘고 김양은 통장을 본적도 없다고 한다.

포주들이 가로챈 이 화대의 금액을 피해자들의 유족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했다. 자발적 윤락에 의한 화대의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의 본문에 의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들이 자발적 윤락을 한 것이 아니고, 포주들이 망인들을 인신매매로 강제로 끌고와 감금시켜서 윤락을 강요해서 화대의 100%를 가로챈 것이므로, 망인들은 범죄피해자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불법성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이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망인들은 포주들에게 화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9 9. 17. 98도 2036판결).

8. 판결의 결과 (1심 판결)

가. 판결의 내용

2000. 7. 4. 선고된 1심 재판결과는 인신매매범과 포주 일당에 대해서는 피해자 손해 전액의 배상을,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승소(위자료 인정), 군산시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비록 국가배상 책임이 위자료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포주들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에서는 ‘포주’가 아니라고 제외하여 입건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포주 이모를 공동포주로 인정해서 포주전원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으며, 배상액은 피해자 가족당 약 2억원-2억4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여 감금과 윤락강요를 방치한 데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여 각 피해자 유족당 2200-2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포주들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해자들을 이 업소에 인신매매로 넘긴 전 업주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군산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망인들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판결내용

이 부분은 판결문을 그대로 게재한다(강조 및 밑줄은 필자가 첨삭).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같은법 제3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4) 구체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중 어떠한 권한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이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행위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군산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강석권, 전영복 등은 이 사건 윤락가 골목에서 윤락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업소 각 방의 창문에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들이 그 내부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산하 군산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윤락업소의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위와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이 위 업소에 감금되어 윤락을 강요받게 됨에 따라 망인들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들인 피고 박중환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망인들의 나이,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들에 대하여 각 금 1000만원, 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만원, 형제자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은 나아가 위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와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 2631 판결 등 참조), 위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윤락영업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업소의 창문 구조 등에 비추어 망인들

이 감금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박중환 등의 과실 즉 이 사건 업소의 내부를 불이 나기 쉽게 불법개조하고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도 받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윤락업소 단속업무를 게을리 할 즈음에 이 사건 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들이 탈출곤란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9.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 확정

위 판결의 항소심(원피고 쌍방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4 나 48588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3. 8. 21.자로 1심 판결과 등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유지하였다.

위 판결의 상고심(피고 대한민국 상고) 대법원 2003다 4900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4. 9. 23. 자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최종 확정시켰다.

이 판결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어, 불법 인신매매, 감금, 윤락강요를 하는 사창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찰을 투입하여 포주들을 체포하고, 피해여성을 구출할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우리 인권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II.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와 경찰의 책임

대명동 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착취구조 및 인권유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무관심과 공권력의 불개입으로 인해 포주들의 손아귀에서 매매, 감금, 윤락강요를 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온 사실과 성매매 여성을 옹호하는 잘못된 윤락행위방지법, 경찰이 포주와 결탁되어 포주를 비호하고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국가공권력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1. 포주가 윤락여성을 감금 착취하는 구조

여성들이 윤락업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허위광고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속아서 윤락이 행해지는 유흥주점이나 티켓다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윤락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대명동 쉬파리골목과 같은 사창가에 들어가는 경우는, 3중 유흥주점 등에서 업주들이 여성이 매상 실적이 낮거나 여성에게 업주들이 지우는 빛이 늘어날 때 빛 회수의 방법으로 이런 윤락업소 포주들에게 돈을 흥정해서 인신매매로 넘겨버려져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직접 업주와 포주간에 흥정해서 인신매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직업소개소를 중간에 끼워서 넘긴다. 그 이유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직업소개소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윤락알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윤락여성에 대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20조). 이는 최초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11. 9. 법률 제771호)에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서(당시 제11조), 제정당시 이 조항의 제정취지에 관해 법제처 사이트에 게재된 입법연혁의 설명에 따르면, "반사회적질서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의하여 포주 등이 윤락여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포주들이 윤락여성에 대해 가지는 윤락관련한 채권은 무효로 함으로써 여성들이 부당하게 포주의 손아귀에 빛 때문에 붙잡혀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제정법 당시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건만, 대한민국 경찰은 40년이 넘도록 이 규정의 적용을 윤락여성을 위해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인신매매대가를 여성에게 전가한 것은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 직업소개소에 지불한 소개비, 선불금 등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빛으로 만드는 것이 무효라는 것조차 경찰은 무시하고 있었다. 포주들이 차용증을 갖고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그 빛의 내역이 위와같이 무효의 선불금, 소개비, 인신매매대가, 윤락관련으로 지운 빛이라는 것은, 고소인이 포주라는 것을 지역에서 훤히 아는 지역파출소나 경찰관은 조금만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며, 그 경우 이 포주들을 오히려 무고로 입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포주들을 위해서 여성을 잡아주고 차용증 빛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차용증이 백모양보하여 순수 민사관계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민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찰이 포주를 위해 빛을 갚으라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요구하는 경우는 윤락업주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사안에서는 거의 없다.

이 사건 대명동 윤락업소에서 쇠창살로 감금당한 상태로 포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망인들 중 망 김양, 망 박양, 망 권양은 영광경찰서, 화천경찰서, 경산경찰서등에서 기소중지자로 지명수배되어 있었다. 기소중지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안정법 등에 대한 조공의 법률지식이나 윤락여성에 대한 포주착취로부터의 인권보호인식과 의지가 있었더라면, 포주들이 도망간 여성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차용증등에 의거한 고소에서, 포주들만 조사하고 막바로 여성들을 기소중지자 지명수배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망 김양과 망 박양은 모두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였다. 망 김양은 인신매매로 팔려오면서 지불한 몸값을 선불금으로 차용증을 만든 것이고, 망 박양은 소개소를 통해 오면서 업주가 지불한 소개비를 선불금이라고 하여 차용증을 만든 것이었다. 경찰은 티켓다방, 직업소개소에 업주가 지불한 선불금 등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현행법상 무효의 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업주의 진술만 받고 망 김양과 박양을 기소중지자로 전국지명수배를 내려버렸다. 그리고 포주와 직업소개소 사람은 검거조차 하지 않았다.

망 권양의 경우 카드사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찰이 조사한 기록만 보더라도 포주들이 장난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망 권양이 카드를 위조해서 옷을 구입했다면, 94년 1월에 분실했다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95년 2월에 신용카드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같은 업소에서 95. 3월-4월 두달간에 걸쳐 수십차례 계속 옷을 구입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포주들이 마담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내어 여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여성들이 마음대로 혼자 나가 신용카드를 쓸 수 없고 감시원이 따라붙어서 포주들이 거래하는 곳에서만 사게 함), 사용대금은 포주가 여성들의 화대를 관리하면서 갚아주다가 여성들이 도망을 갈 경우 이러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을 포주가 갚아주지 않고 물건판매처 회사로 하여금 사기죄 고소를 하게 만들어 지명수배를 내려 도로 잡아오기 위한 방법

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올 경우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도 고소인의 진술만 받고 바로 여성들을 기소중지자로 지명수배를 내려버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빛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면 포주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지명수배를 내릴 것이고, 사람을 보내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갈 것이라고 믿게 된다(이사건의 실제포주 이모한테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업소에서 감금당해 있다가 구출된 임양의 경우도 구출이 된 후에도 포주일당이 임양 집에 찾는 전화를 하여 가족이 불안에 떠는 내용이 나온다).

윤락여성들은 그 빛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빛을 다 갚으면 포주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 빛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포주한테 감금착취를 당하는 상태로 놓여있게 만든다.

3. 대명동 국가배상 판결이 남긴 의미

대도시 한복판, 그것도 파출소 목전에서 쇠창살 감금시설을 하고, 여성을 인신매매로 끌고와 감금해서 윤락을 강요하고 착취하는데도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유린 실상을 외면하고, 포주들과 밀착되어 뇌물을 받으며, 포주들을 경찰서 안에 초청해서 앞으로 기습단속 하겠다고 알려주는 이런 경찰, 경찰이 포주편에서 무효의 채권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도망가는 여성을 잡아서 오히려 포주에게 인계를 해주며, 불법감금 윤락업주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나라는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군산 대명동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윤락여성의 인권유린이 실태는 너무 심각한 것이었으며, 윤락여성이 포주들에게 감금되어 착취당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경찰의 잘못된 태도가 큰 원인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라고 말하려면 우리 경찰의 의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선고된 이 대명동 사건의 판결은, 지금까지 윤락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해온 경찰의 안일한 법집행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며, 불법 인신매매, 감금, 윤락강요를 하는 사창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찰을 투입하여 포주들을 체포하고, 피해여성들을 구출할 의무를 촉구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은 유사상황에 있는 전국의 수십만 윤락여성들의 인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의 근거를 터주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III. 성매매방지법 제정

1. 제정경위

군산대명동사건과 1년 뒤 일어난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참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포주들의 착취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피해여성을 범죄자로 몰아대는 기능만 할 뿐 성매매근절이나 착취구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는 대안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4. 3. 22. 법률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2004.3. 22. 법률제 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위 두개의 법률은 2004. 9. 23.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두개의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일 때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원의 비율은 극히 적었고 이 법안 통과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포주등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2. 법률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위 두개의 법률의 시행부처인 법무부와 여성부가 각 밝힌 내용을 인용한다.

◎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4조).
- 나.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범죄를 신고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6조).
- 다. 신고자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의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법 제8조).
- 라.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보호 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 마.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자의 채무불이행사건을 수사할 때 당해 채권이 불법원인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도록 함(법 제10조).
- 바.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 하도록 함(법 제11조).

- 사. 판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수감명령, 특정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봉사·수감명령은 100시간을, 다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 아.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법 제22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 나.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처 :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주요 골자

- 9.23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기,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됨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상의 인권보호장치가 마련됨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의 형량비교

범죄유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알선등처벌법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 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감금 등 방법 성매매 강요, 고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없음	3년 이상 유기 징역
피보호·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없음	5년 이상 유기 징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윤락행위유인·권유 및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벌금)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윤락행위유인·권유·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알선 목적 등 광고 행위	없음	상동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공급·게재한 행위 등	없음	2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벌금(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좌동(단, 보호처분 원칙)

우리나라의 성매매는 이중규범 속에 존재

○ 성을 사는 남성은 비난받지 않는 반면 성을 파는 여성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봄.

○ 성매매 문제는 일부 남성의 비윤리적 행위나 일부 여성들의 일탈행위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모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여짐.

○ 우리의 성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 성매매는 性을 파는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이는 남성과 결혼 그리고 가족생활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장래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 또한 보다 투명해진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문제

○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방지 대책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인 것

○ 한 사회의 성매매 현실은 그 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지표

(첨부자료 1)

-2003. 7.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진술서

배 금 자(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1. 성매매의 착취구조에 대한 설명

1. 법률명칭에 대하여

법 안	법사위의견
<u>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 관한 법률안</u>	원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중국적으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 관한 법률”보다는 “성매매행위 등의 처벌및방지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의견>

성매매는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 성판매자 이렇게 3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중에서 성판매자는 절대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득을 취하는 주체는 대부분 성매매알선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성매매행위등의 처벌’로 법률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성매매범죄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성매매행위자가 처벌의 주요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정의

법안	법사위의견
<p>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p> <p>나.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p> <p>다.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p> <p>라. <u>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u> <u>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u></p> <p>마.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p>	<p>○ 성매매알선등행위의 개념에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p>

<의견>

현재 대부분의 성매매업소들은 여러 형태의 업소로 등록을 해놓고 겉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다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원, 미용실, 티켓다방, 카페, 노래방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인양 고용해놓고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이 이러한 업소들은 성매매여성들을 종업원인양 고용해놓고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이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었을 때, 업소업주들은 흔히 등록업종을 들이대며 ‘자신들은 등록된 업종에 충실했고 다만 성매매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곤 합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런 경우 성매매사실을 인정한 성매매여성들만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들을 고용하여 큰 이익을 챙긴 업주들은 처벌을 면제받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관리했다면 알선행위로 인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선불금 무효조치

1. 선불금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필요성

법안	법사위의견
<p>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및 장애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자를 말한다.</p> <p>가. 성적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p> <p>나. <u>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u></p> <p>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 이라 한다)에 중독된 상태</p> <p>라. 외국인 여성중 여권 등의 압류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p>	<p>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것을 성매매된 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p>

<의견>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성매매를 강요하여 자신들의 불법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불금을 이용합니다. 처음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선불금을 가불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별생각 없이 업주의 요구대로 선불금을 받고 차용증을 씁니다. 그러나 선불금을 받는 즉시,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게 되면 업주는 당장 선불금을 갚거나 아니면 섬으로 팔아버린다고 위협합니다. 이미 선불금을 빚을 갚거나 환불이나 화장품, 가구 등을 구입하는데 써버린 여성들은, 이러한 위협을 당하게되면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선불금의 굴레에 잡히면, 빚은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러한 피해여성들의 선불금이 늘어났던 과정을 듣다보면, 업주들이 선불금을 통해 여성들을 위협하거나 빚을 늘리는 수법이 매우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처음에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입을 약속하면서 성매매업소로 그들을 유인한 후, 높은 이자와 각종벌금, 보증강요, 지출강요 등을 통해 월급은 거의 지급하지 않고 빚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각종 벌금과 보증인에 대한 인신매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업주들에게 큰 수입원이 됩니다.

즉, 선불금은 업주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주요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선불금 때문에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해야했던 여성들은 당연히 피해자로서 '성매매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채권무효조항의 필요성

법안	법사위의견
<p>제1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업소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그 밖에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p> <p>②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그 밖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고용한 자가 성매매된 자 기타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약정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p> <p>③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인신매매자 그 밖에 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 본인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성매매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 제1항의 “그 밖의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등의 표현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p> <p>○ 인신매매자나 성매매알선자가 성매매된 자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 성격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에게 일률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 권리관계를 도의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음.</p> <p>○ 또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매매행위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p>

<의견>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 4조와 제 20조에는 '윤락알선, 강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윤락여성에 대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1961년 이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⁴⁵⁾ 따라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여성들과의 채무관계는 원인무효가 되며, 형사나 민사를 통해 이 빚을 받아내려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여성들이 도망을 치면,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경찰서에 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성매매관련 범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직업안정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관련한 고소인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

45) 배금자, 2002년 2월 22일자 국민일보 칼럼.

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주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이 여성들을 찾아내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경찰서 앞에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에게 끌려가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사기죄나 윤락행위의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정부에 벌금을 내야 했으며,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친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천만 원 빚이 얹혀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업소로 팔리곤 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다행히 무형의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선불금에 대한 무효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압박합니다. 이 여성의 보증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년간을 업주에게 시달리다 보면, 주변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매매를 했었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지게 되어 피해여성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니느라 정상적인 취업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결국 업주가 시키는 대로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갚고 또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주요수단인 점을 직시한다면, 선불금에 대한 무효조치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이를 규율한다는 것은 성매매알선자들이 피해여성들을 괴롭힐 소지를 남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을 무효조치하는 것은, 성매매알선자들이 선불금무효조항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성매매여성의 가족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는 식의 교묘한 수법으로 빚을 굴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자가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선불금임을 알고서도, 그 여성에 대해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협박하여 선불금, 또는 그 이상의 액수를 받아내거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 성매매된자의 선불금 관련 형사처벌 특례규정의 필요성

법안	법사위의견
<p>제16조(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형을 면제한다.</p> <p>④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선불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위약약정에 따른 채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채무와 관련하여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성매매된 자와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성매매된 자의 처벌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해당법률에서 규율할 사항이므로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p>

<의견>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 설명한 채권강요와 함께 선불금 등 각종 차용증서를 확보한 업주들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을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대부분 인근 경찰과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도망가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은 업주들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피해여성을 전국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여성들을 검거하면 고소한 해당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여성들의 선불금등 채무의 무효조항에 대해 심리를 거의 하지 않으며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쉽게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불금 등 관련 채무를 무효로 한다면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도 면제하여야만 성매매와 인간착취의 근본적인 고리를 차단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의 법률과 법집행기관이 성매매와 인간착취를 하는 업주들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첨부자료2)

2002.02.22.

[국민논단-배금자] 윤락여성의 '채무' 는 무효다

윤락업소 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군산의 업소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인신매매,감금,화대착취,윤락강요 등의 생활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도망갈 수 없다고 절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포주들이 여성들에게 지운 '빚' 때문이며 이러한 빚은 무효인데도 공권력이 이를 묵인 또는 보호한다는 데 있다.

군산 사건에서 포주는 여종업원들이 작성한 '현금차용증' 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것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여성들의 일기장 곳곳에도 "언제쯤 빚을 갚고 헤어날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이 가득했다. 실제 윤락여성들에게 빚의 존재는 포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문서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여성들이 포주에게 진 빚의 내역도 부당하기 이를 데 없지만,1961년 최초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에서부터 현재의 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빚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홍보되지 않고 오히려 윤락업계는 물론이고 경찰까지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더욱 개탄할 일이다.

그 빚의 내역은 소개소에 업주가 지불한 소개비,업소 주인끼리 여성들의 몸값을 정해 팔아 넘기면서 지불한 인신매매 대가를 여성에게 전가한 것,윤락을 강요하면서 방값,숙식비 명목으로 부과한 것,몸이 아파 쉴 경우 벌금으로 올린 것,여성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고리 사채를 쓰게 하고 빚을 증가시켜 윤락을 계속 강요하는 수단으로 형성시킨 것들이다.

이러한 빚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제20조에 윤락 알선,강요,윤락장소 제공,윤락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윤락여성에 대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빚의 내역은 바로 전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인 것이다.

무효라는 의미는 업주가 여성들에게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여성들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주가 차용증을 강요하면 형법상 '강요죄' 가 되며,여성들은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 업주들은 이러한 채권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와 같은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포주 등의 윤락여성에 대한 채권을 무효로 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 취지에 관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의하여 포주 등이 윤락 여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일체 무효로 하도록 함" 이었다고 법제처의 입법 연혁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윤락여성에 대한 포주들의 채권을 무효로 하는 법규정은,여성들의 인권착취를 막고 포주들의 불법원인 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규정된 것이다.

제18기 인권학교

그런데도 40년간 내려온 이 중요한 규정을 법집행의 일선에 있는 경찰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더욱 놀랄 일은 경찰이 포주를 위해 그 빛을 받아주는데 협조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가공권력은 윤락업주들에게 여성들이 그 무효의 차용증 빛을 갚는 데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도망갈 경우 포주는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죄로 여성들을 고소하고, 경찰은 그 포주가 윤락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간 여성들을 전국 지명수배자로 만든다. 포주들은 그 여성들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여성들은 대부분 잡혀와서 다시 포주에게 넘겨진다. 경찰은 여성들에게 포주에 대해 '빛을 갚을 것을 요구' 하거나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그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 포주에게 진 빛을 갚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공권력이 40년간 내려온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포주편에서 무효의 채권을 받아주는데 우호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윤락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집행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문제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경찰과 경찰도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의7. 일상 속의 여성인권 감수성 깨우기

김지량(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담당)

1. 개념 알아보기

SEX : 육체적인 조건

생물학적 타고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말한다.

예) 여성의 생리, 임신, 수유, 남성의 정자 생산 등.

SEXUALITY : 성성(性性), 신체적, 육체적 욕구를 뜻하나 학계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GENDER

배움을 통한 사회적 성과 그 성에 따른 역할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 문화적 차이,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회 문화적 행동, 특성과 가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학습된 것.

예) 남성이라는 SEX를 가진 사람도 모성애를 가지고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성역할(Gender role)

성별 역할에 따라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또는 규정된 행위와 문화적 기대치. 성역할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행하는 사회적 활동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 규범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은 재생산영역(가정), 생산영역, 그리고 지역사회영역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별노동분업(Gender division of labor)

여성과 남성에게 알맞다고 여겨지는 다른 역할, 책임, 활동, 일 등이 할당되는 것. 이것은 남성의 생물학적 이거나 혹은 타고난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현상.

몰성적(Gender Blind)

젠더는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 type)

남성은 남성답고 남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여성답고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기대와 규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능동적, 공격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여성은 수동적으로 부드러우며 감정적이라는 등의 성별에 따른 기대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대립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사회화 과정과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여성 남성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성별 분석(Gender Analysis)

정책이나 계획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성별분석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된 자료가 필요하며 일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평가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특정 활동, 결정, 계획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언제나 질문해야 한다.

접근권(access)

정보, 자원, 혜택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고, 성역할과 성별노동분업에 따라 달라진다.

권력관계(power relation)

젠더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 사회, 정치, 경제 체계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결정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과 관련 있다.

2. 여성과 남성, 삶 속에서의 네 가지 형태의 차별

(1) 의도적 차별(Intent Discrimination)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차별

☞ 개선책: 정치인, 고용주, 정책입안자, 교사, 개발 활동가 등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육

(2) 불평등한 대우(Unequal Treatment)

나이든/젊은, 남성/여성처럼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관례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 개선책: 모든 집단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관행/실천의 채택

(3) 체계적 차별(Systemic Discrimination)

소자들과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들, 그러한 관행을 가져오는 지역사회의 기본 규범이나 조직 정책은 해를 끼치려는 의도나 편견 없이도 만들어지고 시행된다. 체계적 차별은 또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조직과 기관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규범에 따른 것이다. 개인들은 체계적 차별을 느낄 수 있지만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 그것은 보통 비의도적이다.

☞ 개선책: 체계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해결책을 적용해야 한다.

(4) 제도간 차별(Inter-Institutional Discrimination)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의도적 혹은 명백한 차별은 다른 곳에서 비의도적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훈련기회를 거부당한 여성들은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 개선책: 의도적 혹은 명백한 차별은 모니터링과 새롭게 개발된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과 아울러 개선책들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3. 성차별 성찰하기

성차별 행동체크 목록- 남성들을 위한 목록

1. 당신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경우들을 찾아보세요. 밤에 여성을 뒤따라 걷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길을 건너세요. 남성들끼리 무리지어 빈둥거리거나 길을 막지 마세요. 조용한 장소에서나 밤에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방향을 물어보세요.
2. 여성의 외모나 옷차림을 훑어지게 쳐다보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코멘트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적 괴롭힘입니다.
3.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세요.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만의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4. 당신이 여자 동료와 일할 경우, 수입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5. 당신의 기분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남자의 성차별에 맞서십시오.
7.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에 요구하십시오.(예: 보건, 복지)
8. 아이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소년과 소녀 모두 풋볼과 바느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9. 소위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남성 권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들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체크 목록은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1985년 9월 유 인터내셔널리스트에서 따온 것이다.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사단법인 또 하나의 문화

TIP : 국제엠네스티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

(1)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 대하여 세계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때까지 무척 성공적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들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사회에 도입되게 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문화, 종교, 인종 운동 등 일부 전통적인 세력들이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반대 세력들은 위의 변화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반대 세력들은 흔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기를 주장하고, 종교, 문화, 관습, 전통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선동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기독교 단체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the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가족의 사생활 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이 협약들을 문제시하곤 한다.

국제회의에서 이들 반대 세력들은 여성 인권의 진보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UN 총회의 여성 관련 세션에서, 많은 수의 정부가 5년 전 베이징에서 체결된 UN 여성 국제 협약의 위임안을, 특히 성적 권리와 출산 권리 영역에서 거부하려고 노력했다. 현재의 미 행정부, 교황청과 이슬람 대표자들이 성(性)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 정부의 해결책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2003 인권 위임안 중에서 여성의 성(性)적 권리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

2003년, 여성의 지위에 대한 위임안(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 등의 지원 하에 이란과 이집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며, 또한 여성 폭력 제거 선언에 언급된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어떠한 관습, 전통 혹은 종교적 고려를 삼가한다."는 구절에 반대하였다. 세 나라의 정부는 이렇게 십년 이상의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얻어진 원칙과 용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들 세 나라는 또한 무장 분쟁 하의 여성에 관한 언급 중 "강제 임신"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는 인식을 시사하는 용어들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도중 힘들게 얻어낸 성과물들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반대"의 실례들이다. 이러한 예들은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여성 폭력에 대항하여 활동하려는 여성들이라면 겪게 되는 적개심, 비난, 폭행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여성 폭력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권 유린 중 하나라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폭력을 당했던 경험, 그리고 폭력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오늘날 어디서나 여성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성들은 세 명 중 한 명꼴로 성별 차이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거나, 특정 상황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 상황에서든 평화로운 사회에서든 간에, 여성들은 국가, 지역사회, 가족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와 폭력을 당하게 된다. 태어나서 곧 살해되는 여자 아기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친척, 다른 남자, 경찰 혹은 군인들로부터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강제 임신, 강제 낙태, 배우자 화형, 혼수품 관련 폭행 등 특정 폭력은 여성들만 당하는 것이다. 배우자 강간, 아내 구타 등을 포함하는 가정 폭력은 여성과 소녀들이 더 많이 당한다. 분쟁 중에는 여성들을 비인간화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을 처벌하려는 의도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성 폭력은 특정 정치 경제 체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수준이나 인종, 문화와도 상관이 없고, 세계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다.

(3) 여성에 대한 폭력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폭력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서, 이로 인하여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형벌, 범죄가 발생한다. 폭력은 차별에 근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차별에 기여하고, 차별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성차별은 흔히 다른 형태의 차별과 동반되어 여성들을 더욱 소외시키게 된다.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여성들, 원주민 여성들, 동성애자, 양성애자 혹은 성전환 여성들, 이민 온 여성들 또는 소수종교를 믿은 여성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 등은 다중의 차별을 받게 된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폭력들은 전혀 연구되지도 않았다. 가해자들은 집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혹은 무장분쟁 상황에서든, 자신의 범죄 때문에 체포되거나, 고발당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또한 강화하는 것이다.

(4) 인권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투쟁하게 하는가?

인권은 우리가 성,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전 세계적인 본질은 종교나 문화, 관습 중 그 어떤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책무, 정의, 배상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제18기 인권학교

강의8. 앰네스티운동과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김명식(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담당)



앰네스티의 상징:
어둠속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비추는
희망의 촛불

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앰네스티의 유래

포르투갈 학생 2명이 잔을 들어 자유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단순히 이 일 때문에 두 학생은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영국인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은 영국 신문 옵저버지(The Observer)에 이를 기고하고 "잊혀진 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를 계기로 피터 베넨슨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즉, 사면 탄원(Appeal for Amnesty)이 1961년 시작됩니다. 불합리했던 사례를 공개하고자 시작했던 일이 6개월 만에 항구적이며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해나갔고, 1962년 "국제앰네스티"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 합니다.

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세계 시민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의 피해자 개개인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앰네스티가 발전해가면서 운동 핵심을 양심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고문, "실종", 사형제도와 같은 인권침해 문제로 확대해나갔습니다.

1977년 앰네스티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인권 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78년에는 유엔 인권상(UN Human Rights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앰네스티는 160개가 넘는 국가에 1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가장 큰 인권단체가 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는 단체로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에 방문단을 파견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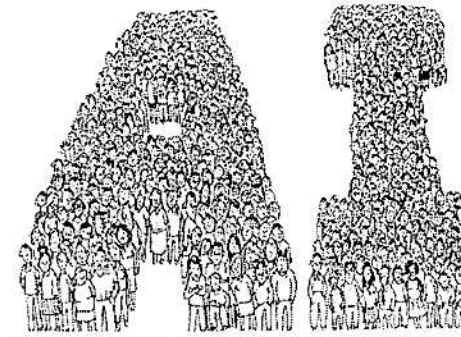
◆ 국제앰네스티의 비전과 사명

앰네스티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함을 유지할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지킬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고 중단시키는데 중

점을 두고 모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 활동 원칙



- 국제적인 연대: 인권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앰네스티는 인권 보호는 일국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라는 신념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앰네스티의 조사와 캠페인 및 법률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은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실제 여자, 남자 그리고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세계적 활동 범위: 앰네스티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모든 형태의 정부 하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가 간 인권침해 정도를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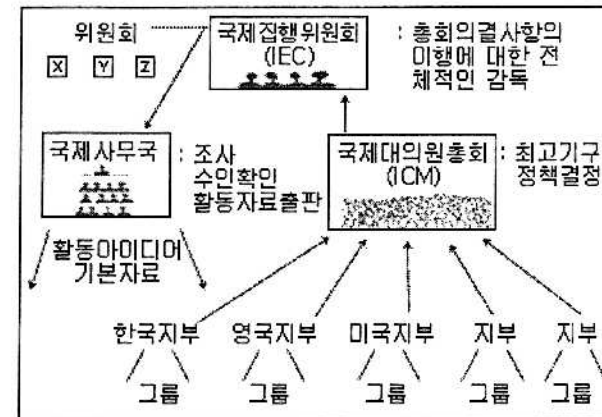
-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인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정치적인 견해, 국적 및 사회적인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이 가능하려면 자유의 권리, 안전의 권리와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정치적인 불편부당성: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나 정치 체제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앰네스티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독립성: 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도 독립적입니다.

-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앰네스티는 세계 전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운동단체입니다. 앰네스티의 활동은 아래와 같은 체계를 통해 조직됩니다



- 그룹 : 다섯명 또는 그 이상
- 지부 : 국가적인 수준에서 앰네스티 회원들과 그룹의 활동 지원·조정합니다.
- 국제사무국 :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부, 그룹 및 회원들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

◆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방식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발전에 기반이 되는 인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정부는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모든 정부들이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모든 인권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세계인권에서 명시된 모든 권리를 지지하며 널리 알리고 실현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앰네스티가 활동에 있어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똑같은 관심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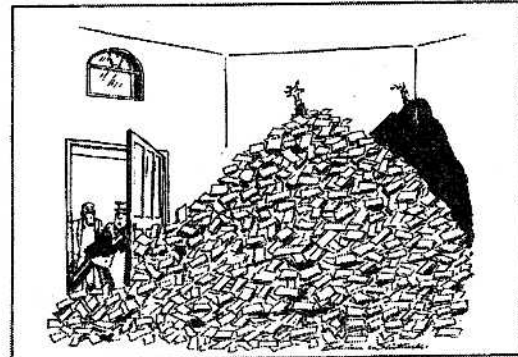
- 양심수 석방
- 모든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보장

앰네스티 활동

서명운동을 위한 안내대 설치, 홍보물 제작, 배포, 거리활동, 탄원편지쓰기, 강연회나 세미나, 언론홍보, 거리행진, 지역라디오, 다양한 기본활동, 콘서트, 영화/비디오 상영, 모금활동, 인권 교육

캠페인 활동 방식

- 사형제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폐지
- 비사법 처형과 "실종" 종식
- 인권침해 범죄자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도록 활동하며 이들의 불처벌에 반대하는 투쟁



수년 동안 앰네스티는 이 수임사항을 확대하여 비정부 기구와 민간인 또는 민간 조직(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앰네스티는 인질 납치, 고문, 불법적인 살인 등 무장 정치 조직(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나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앰네스티는 무장 갈등 상태 하에 민간인과 비전투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 모두를 반대합니다. 앰네스티는 정부가 방조 또는 공조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가정과 지역 사회 내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할례, 성매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폭력 등이 가정과 지역 사회 내의 인권침해 범주에 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는 정부 당국의 방조 또는 용인 하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3월 28일 창립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두 차례 폐쇄되는 과정을 거쳐 1993년 3월 현재의 지부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안양, 강릉, 전주, 구미 등의 지역에서 27개 그룹과, 18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로서 언론인위원회, 국회모임, 법률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룹, 동아리, 개인, 후원회원 등 약 2,000여명이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해 한

국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이 침묵하면 이 모든 불행은 계속 된다 ”

